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92-01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주간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공공후견인서비스,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2022. 07.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연구진

연구 책임 : 구만서 (함께하는 사회복지정책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홍철 (사회복지연구소 가치 대표)

연구 보조 : 구첵회(사회복지사)
임선영(사회복지사)

목 차

I	서론	
	1.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목적	1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의 범위 및 방법	4
II	발달장애인 정책현황	
	1. 발달장애인 현황	9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현황	20
III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방법	
	1. 모니터링 체계 및 방법	57
	2. 분야별 모니터링	59
IV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1. 분석자료의 개요	69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71
	3.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80
	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서비스	89
	5.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99
V	제언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27
	2.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30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서비스	132
	4.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134
VI	참고문헌	139
VII	부록	143



표 목 록

<표 1> 전체 등록장애인 현황	9
<표 2> 발달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10
<표 3> 지적장애인 현황	10
<표 4> 자폐장애인 현황	11
<표 5> 발달장애인의 성별, 연령	12
<표 6> 의사소통 수준	12
<표 7> 월평균 임금(순수입)	13
<표 8> 일상생활 주 도움 제공자(1순위)	14
<표 9> 보호자가 판단하는 장애인 자녀의 자립 가능 정도	14
<표 10>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된 주체(결정권자)	15
<표 11>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가구)	15
<표 12> 주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16
<표 13> 지적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현황	16
<표 14> 자폐성장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현황	17
<표 15> 지적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8
<표 16> 자폐성장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9
<표 17>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26
<표 18> 2022년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27
<표 19> 주간활동서비스 정책 모니터링 분석틀에 따른 결과	30
<표 20>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단가	32
<표 21> 방과후활동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예시	32
<표 22>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시 기본사항	35
<표 2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간	36
<표 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통계	38
<표 25>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9
<표 26> 장애인 일상생활 시 도움 충분도	39

<표 27>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률	39
<표 28>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40
<표 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사업개요	41
<표 30>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와 역할	43
<표 3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사업 이용 경험률	45
<표 32>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만족도	45
<표 33>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3종 지원 서비스 현황	47
<표 34> 전국·서울·경기 주거약자 의무건설 장애인 입주상황	48
<표 35> 주요 선진국가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교	48
<표 36> 공공임대주택의 형태	48
<표 37> 주거서비스 내용	52
<표 38>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유형 분석	53
<표 39> 발달장애인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58
<표 40>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별 모니터링 실시 현황	59
<표 41> 인터뷰 구성 내용	61
<표 42> 그룹홈 인터뷰 참가자	62
<표 43>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치 인터뷰 참가자	63
<표 44>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인터뷰 참가자	63
<표 45>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인터뷰 참가자	64
<표 46>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인터뷰 참가자	64
<표 47> 서울시 퇴소 직전의 장애인 인터뷰 참가자	64
<표 48> 발달장애인 인터뷰 참가자	69
<표 49> 발달장애인 인터뷰 응모 현황	70
<표 50>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현황	76
<표 51> 발달장애인 서비스 선택이유	76
<표 52> 발달장애인 제공기관 선택이유	77
<표 53> 발달장애인 이용자 선정	77
<표 54>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78

<표 55> 서비스 제공기관 공간 및 접근성	78
<표 56> 발달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인지도	78
<표 57> 주간활동서비스 전반적인 만족도	79
<표 58> 활동지원서비스 설문 응답자 자녀의 연령대 및 성별분포	84
<표 59>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유형 구분	84
<표 60>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정도 구분	85
<표 6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기간	85
<표 62> 활동지원서비스 정보의 접근성 및 내용의 충분성	85
<표 63> 활동지원 제공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의견반영	86
<표 64> 활동지원서비스 연결성	86
<표 65> 활동지원 인력의 전문성	86
<표 66> 활동지원 제공시간의 충분성	87
<표 67>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실행여부	87
<표 68>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88
<표 69> 공공후견인 전문자격 취득 유형	91
<표 70> 공공후견업무의 내용	91
<표 71> 공공후견활동 기간	92
<표 72>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도움정도	92
<표 73> 피후견인 선정되기까지의 어려웠던 점 또는 보완할 점	93
<표 74>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이 선정되기까지 발달장애인의 의사반영정도	93
<표 75> 월평균 공공후견업무 횟수	94
<표 76> 월평균 피후견인과의 만남 횟수	94
<표 77>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94
<표 78>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정도	95
<표 79>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95
<표 80> 후견활동의 관리감독 과정 적절성	96
<표 81> 옹호나 지원체계의 필요성	96
<표 82> 공공후견활동이 피후견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정도	96

<표 83> 공공후견활동으로 발달장애인(피후견인)에 대한 인식 변화	97
<표 84> 공공후견인 활동비의 적절성	97
<표 85> 희망하는 공공후견인 활동비(한달 기준)	98
<표 86> 주거서비스 장애인 성별	117
<표 87>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유형	117
<표 88> 발달장애인 주거환경 만족도	118
<표 89>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주거서비스	118
<표 90>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희망 여부	119
<표 91>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시 원하는 동거인	121
<표 92>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시 희망하는 주택유형	122
<표 93> 발달장애인 자립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서비스	123
<표 94>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공통·일반적 설문	143
<표 9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정책관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설문	143
<표 9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설문	144
<표 97>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설문	146
<표 9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설문	147
<표 99>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공통설문	149
<표 100> 발달장애인 그룹홈 FGI 설문	150
<표 101> 발달장애인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치 FGI 설문	150
<표 102> 발달장애인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FGI 설문	151
<표 103> 발달장애인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FGI 설문	151
<표 104> 발달장애인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FGI 설문	152
<표 105>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FGI 설문	152

 그림목록

<그림 1>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체계	28
<그림 2>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체계	37
<그림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44
<그림 4> 모니터링 체계	57
<그림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58

I

서론

I. 서론

1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목적

- 발달장애는 인간의 생애주기 동안에 각 단계에 요구·기대되는 발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아동영역의 발달 영역은 사회성과 놀이, 자조·적응기술(옷입기, 식사하기, 신변), 운동, 이동, 언어(말의 이해와 표현), 인지 등에서 발달지연이 나타난다. 이에 해외¹⁾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체장애인과는 또 다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4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을 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2014년 5월 20일 제정하여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은 전국 등록장애인 2백60여만 명 중 약 24만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9.2%에 불과하나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개별적으로 계획 조정되고 통합된 형태의 포괄적인 특별서비스가 필요하다.
- 동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인간다운 삶 영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를 구체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를 2019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제도화된 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절반 가량인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낮 시간 동안에 자신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 Bill of Rights Act), 일본의 지적장애자복지법, 호주 빅토리아주의 지적장애인서비스법 등이 있다.

- ‘발달장애인법’ 제3조2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직 내 권리구제팀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은 자립과 탈시설화를 목표로 실행되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책은 명확하지 않고, 거주시설 외에 그룹홈,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이 제도화되면서 구체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들이 논의되고 있다.

- 이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결정권 등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다양한 활동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수요자 중심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모니터링(Monitoring)은 서비스를 행하는 정책 대상이나 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정으로, 향후에 정책 결정 과정에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는 정해진 그룹이나 단일 대상을 주기적, 일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대상의 상태를 평가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모니터링은 인권적 관점으로, 자기결정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공후견인서비스, 주거서비스에 대해 법과 정책 및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발달장애인 본인과 부모, 복지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적절한지, 추가적인 정책의 보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 이에 본 모니터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및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 둘째,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 셋째, 거주시설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한 소규모시설 등 탈시설화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추진과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본 모니터링의 범위는 최근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정부의 방식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2019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던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발달 서비스 중 자립지원을 위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서비스, 발달장애인 주택과 결합된 주거서비스로 한정하였다. 각각 법적 근거, 용어 또는 개념정의, 모니터링 범위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기존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던 시설 기반 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적 근거 : ‘발달장애인법’ 제 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 용어 정의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주간활동서비스 모니터링 범위/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니터링 범위 :
 -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한 이유,
 - 주간활동서비스가 특성과 욕구에 맞게 그룹형성이 되었는지 여부,
 -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여부,
 - 제공기관의 접근성 만족여부,
 - 참여중인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인지 여부,
 - 주간활동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 방법 : 주간활동 부모 FGI, 주간활동 제공기관, 주간활동 인력(전담관리인력)을 대상으로 개별 FGI 인터뷰, 주간활동기관 현장 방문, 주간활동 부모 및 보호자 온라인 설문 조사한다.

□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서비스이다.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 제55조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기본원칙), 제5조(신청자격), 제6조(신청), 제12조(수급자의 유효기간), 제22조의 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용어 정의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인 식사활동, 신변활동, 가사활동, 이동, 목욕, 사무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이다.
-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범위 :
 -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충분성,
 - 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 자녀의 의견 반영정도,
 - 활동지원서비스 변경 시 공백없는 지속성,
 -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의 충분성,
 -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여부,
 - 활동지원사의 인권침해 사례여부,
 - 활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질문하였다.
- 방법 : 활동지원인력 FGI 인터뷰, 부모 및 보호자 온라인 설문조사

□ 셋째, 공공후견인서비스는 의사결정능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사업이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14조의 2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용어 정의 : 후견이 필요한 누구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재정적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발달장애인 중 특정후견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공공후견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공공후견인서비스 모니터링 범위 :
 - 전문자격 취득유형,
 - 후견업무의 내용,

- 후견활동기간,
 - 후견인 양성교육 도움정도,
 - 피후견인 선정되기까지 어려웠던 점 또는 보완할 점,
 - 법원에서 후견인이 선정되기까지 발달장애인의 의사 반영정도,
 - 월평균 후견업무 횟수,
 - 월평균 피후견인과의 만남 횟수,
 -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여부,
 -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정도,
 -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 후견활동의 관리감독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 방법 : 공공후견인 FGI 인터뷰 및 온라인 설문조사

□ 넷째, 주거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로만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개별 주택에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기존의 지역사회 그룹홈, 서울시 지원주택,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 법적 근거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1.8.2),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용어 정의 : 장애인주거서비스는 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영역, 가사관리 등 일상생활 영역, 사회참여 영역, 법률 지원과 같은 옹호영역까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영역들을 포함한다.
- 주거서비스 모니터링 범위 :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유형,
 - 주거환경(내부, 외부 환경, 접근성 등) 만족도,
 -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주거서비스,
 - 자녀의 자립희망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 방법 : 그룹홈 이용자 방문 FGI 인터뷰,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치, 주거 코디네이터 ZOOM FGI 인터뷰,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방문 FGI 인터뷰,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자립생활주택 퇴소 직전 이용자 방문 FGI 인터뷰 및 부모 및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였다.

II

발달장애인 정책현황

II. 발달장애인 정책 현황

1 발달장애인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장애인은 264만여 명이다. 그 중 지체장애인이 119여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시각장애인 25만2천 명, 뇌병변장애인이 24여만 명 등이며, 발달장애인은 24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2).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체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장애유형	계	남자	여자
지체장애인	1,191,462	691,136	500,326
시각장애인	251,620	149,321	102,299
청각장애인	411,749	216,505	195,244
언어장애인	23,064	16,374	6,690
지적장애인	221,557	133,375	88,182
뇌병변장애인	248,308	142,600	105,708
자폐성장아인	33,650	28,218	5,432
정신장애인	104,214	52,958	51,256
신장장애인	102,135	60,527	41,608
심장장애인	5,166	3,340	1,826
호흡기장애인	11,541	8,503	3,038
간장애인	14,433	10,119	4,314
안면장애인	2,712	1,582	1,130
장루·요루장애인	16,012	9,856	6,156
뇌전증장애인	7,077	3,866	3,211
합계	2,644,700	1,528,280	1,116,420

※통계청(2022)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으로 정신적장애인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적장애인은 22만1천여 명, 자폐성장아인은 3만3천여 명으로 발달장애인은 '10년 7.0%, '15년 8.5%, '19년 9.2% '22년 10.3%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22).
- 발달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2>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55.7%가 약간 받음, 별로 받고 있지 않음 35.3%이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약간 받음 59.8%, 별로 받고 있지 않음은 40.2%로 많은 발달장애인이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 발달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장애 유형	2017(%)			
	매우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고 있지않음	전혀받고 있지않음
지적장애	4.7	55.7	35.3	4.4
자폐성장애	-	59.8	40.2	-

※ 통계청(2022)

□ 지적장애인 현황

통계청 자료 <표 3>을 보면 지적장애인의 출현율은 .37%에서 .40%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도 20~29세가 가장 많고, 70세 이상이 가장 적은 .03%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3> 지적장애인 현황

(단위: 명, %)

연령	연도	2014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추정수 (명)	출현율										
계		182,332	.37	105,842	.44	76,490	.31	197,181	.40	111,892	.45	85,289	.34
0~9		7,455	.16	5,394	.23	2,061	.09	10,306	.23	5,115	.22	5,191	.24
10~19		41,786	.69	23,807	.75	17,977	.62	36,632	.68	23,898	.85	12,734	.49
20~29		42,168	.68	25,223	.81	16,945	.56	61,567	.99	38,101	1.2	23,466	.78
30~39		33,353	.44	19,729	.51	13,624	.36	27,288	.37	14,739	.39	12,549	.35
40~49		22,981	.28	13,133	.31	9,848	.24	30,058	.36	16,707	.39	13,351	.32
50~59		23,585	.31	14,179	.38	9,406	.25	22,240	.28	10,306	.25	11,934	.30
60~69		8,499	.20	3,999	.19	4,500	.20	7,423	.15	2,259	.09	5,164	.20
70~		2,508	.06	378	.02	2,130	.08	1,667	.04	767	.04	900	.03

※ 통계청(2022)

□ 자폐장애인 현황

자폐장애인 현황을 보면 2014년 출현율 .04%에서 2017년 .05%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령대는 0~9세가 2014년 .07%에서 2017년 .15%로 높아졌고, 10~19세는 2014년 .16%에서 .13%로 낮아졌으며, 20~29세는 .10%에서 .12%로 높아진 추세를 나타냈다.

<표 4> 자폐장애인 현황

(단위: 명, %)

연령	연도	2014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추정수(명)	출현율										
계		18,951	.04	16,802	.07	2,149	.01	22,972	.05	19,655	.08	3,317	.01
0-9		3,182	.07	2,745	.12	437	.02	6,672	.15	5,349	.23	1,323	.06
10-19		9,482	.16	9,208	.29	274	.01	6,860	.13	5,668	.20	1,192	.05
20-29		6,286	.10	4,848	.15	1,438	.05	7,456	.12	6,654	.21	802	.03
30-39		0	0	0	0	0	0	1,984	.03	1,984	.05	0	0
40-49		0	0	0	0	0	0	0	0	0	0	0	0
50-59		0	0	0	0	0	0	0	0	0	0	0	0
60-69		0	0	0	0	0	0	0	0	0	0	0	0
70~		0	0	0	0	0	0	0	0	0	0	0	0

※ 통계청(2022)

□ 본 모니터링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공후견인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5개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에 앞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²⁾을 파악한다.

□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 2021년 6월 현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9,497명 중 남성은 129,534명(61.8%), 여성은 79,963명(38.2%)이며, 자폐성장장애인의 남성 비율(86.3%)이 지적장애인(59.6%)보다 높다.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9,497명 중 지적장애인은 191,700명으로 91.5%를 차지하고 있고, 자폐성장장애인은 17,797명으로 8.5%의 비율이다.
- 연령별로는 15~19세 10.9%, 20대 29.4%, 30대 19.8%, 40대 16.2%, 50대 13.2%, 60세 이상은 10.5%로 평균 연령은 37.1세이며, 29세 이하 비중은 지적장애인은 37.0%인데 반해 자폐성장장애인은 77.1%로 차이를 보였다. 그에 따라 평균 연령도 지적장애인은 38.3세이며, 자폐성장장애인은 24.7세로 추정되었다.
- 최종학력은 ‘무학’ 16.0%, ‘초등학교 졸업’ 12.1%, ‘중학교 졸업’ 15.9%, ‘고등학교 졸업’ 51.1%, ‘대학교 이상 졸업’ 4.9%이고,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13.3%, 경기 21.0%, 광역시도 23.6%, 기타시도 42.2%이다. 아래 <표 5>는 발달장애인의 성별, 연령별 분포표이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임금수준, 일상생활 주 도움제공자, 일상생활만족, 자립의지, 장애인관련서비스,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등을 요약함.

<표 5> 발달장애인의 성별, 연령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129,534	61.8	114,170	59.6	15,364	86.3
	여성	79,963	38.2	77,530	40.4	2,433	13.7
연령	15~19세	22,937	10.9	18,795	9.8	4,141	23.3
	20~29세	61,633	29.4	52,055	27.2	9,578	53.8
	30~49세	75,298	35.9	71,246	37.2	4,052	22.8
	50세 이상	49,629	23.7	49,604	25.9	25	0.1
	평균연령	37.1세		38.3세		24.7세	
전체		209,497		191,700	100.0	17,797	1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수준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과 관련해서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55.4%,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6.2%,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10.9%,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7.4%로 나타났다. 간단한 문장 수준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81.6%이며, 지적장애인은 82.7%, 자폐성장애인은 70.1%이다.
-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62.1%,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17.4%,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9.7%,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6.4%,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4.4%로 나타났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79.5%이며, 지적장애인은 80.5%, 자폐성장애인은 68.9%이다.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 역시 자폐성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의사소통 수준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116,033	55.4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54,936	26.2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2,928	10.9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 못함	15,601	7.4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두 단어 이상의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130,063	62.1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36,471	17.4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0,322	9.7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13,377	6.4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9,265	4.4
전체		209,497	1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 발달장애인의 임금수준

- 발달장애인 취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의 월평균 임금(자영업자의 경우는 순수입)은 평균 100.8만원이며, 지적장애인은 102.6만원, 자폐성장장애인은 83.5만원이다. 자폐성장장애인의 임금수준이 지적장애인의 임금에 비해 8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0~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은 지적장애인이 22.1%에 비해 자폐성장장애인은 10.5%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상의 경우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7> 월평균 임금(순수입)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50만원미만	14,485	25.5	12,872	25.0	1,613	29.9
50~100만원 미만	16,742	29.4	14,689	28.5	2,053	38.1
100~150만원 미만	9,503	16.7	8,594	16.7	908	16.8
150~200만원 미만	11,977	21.0	11,408	22.1	569	10.5
200만원 이상	4,206	7.4	3,956	7.7	251	4.6
전체	56,913	100.0	51,519	100.0	5,394	100.0
평균 임금(순수입)	100.8만원		102.6만원		83.5만원	
응답 추정 수	55,835		50,618		5,21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 발달장애인의 주 도움 제공자

-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1순위)은 부모가 6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우자 및 자녀’ (10.6%), ‘형제자매’ (9.5%) 등의 순이다.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도와주는 비율이 92.1%로 지적장애인(66.2%)에 비해 높다.

<표 8> 일상생활 주 도움 제공자(1순위)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부모	107,773	68.7	93,644	66.2	14,129	92.1
조부모	4,030	2.6	3,686	2.6	344	2.2
형제자매	14,845	9.5	14,586	10.3	259	1.7
배우자 및 자녀	16,677	10.6	16,652	11.8	25	0.2
친인척	3,888	2.5	3,863	2.7	25	0.2
활동지원사	5,956	3.8	5,574	3.9	382	2.5
공공후견인	142	0.1	142	0.1	0	0.0
기관 종사자	2,638	1.7	2,480	1.8	157	1.0
친구 및 이웃	535	0.3	511	0.4	24	0.2
기타	308	0.2	308	0.2	0	0.0
전체	156,792	100.0	141,447	100.0	15,345	1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 발달장애인의 자립의지

-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 정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74.2%이다.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73.4%,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83.0%이다.

<표 9> 보호자가 판단하는 장애인 자녀의 자립 가능 정도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41,035	19.6	38,195	19.9	2,841	16.0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155,430	74.2	140,657	73.4	14,773	83.0
이미 혼자 힘으로 살고 있음	13,032	6.2	12,849	6.7	183	1.0
전체	209,497	100.0	191,700	100.0	17,797	1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된 주체(결정권자)는,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결정권자)는 보호자가 79.4%이며, 장애인 본인이 20.0%이다. 장애인 본인이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인 비율은 지적장애인 20.3%, 자폐성장애인 17.2%이다.

<표 10>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된 주체(결정권자)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본인	41,931	20.0	38,866	20.3	3,065	17.2
보호자	166,248	79.4	151,531	79.0	14,717	82.7
그 외 사람	1,318	0.6	1,303	0.7	15	0.1
전체	209,497	100.0	191,700	100.0	17,797	1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 당사자와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응답 받은 결과, ‘경제적, 소득 지원’ 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재활, 건강지원’ (41.3%), ‘돌봄, 보호, 휴식지원’ (30.8%), ‘고용 및 고용 유지지원’ (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소득지원’ 을 제외하면 지적장애인은 ‘의료, 재활, 건강지원’ 을, 자폐성장장애인은 ‘돌봄, 보호, 휴식지원’ 과 ‘교육, 문화, 여가활동지원’, ‘심리, 사회, 정서적지원’ 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가구)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경제적 소득지원	149,992	71.6	140,150	73.1	9,842	55.3
의료, 재활, 건강지원	86,523	41.3	81,218	42.4	5,305	29.8
고용 및 고용 유지지원	51,284	24.5	46,283	24.1	5,001	28.1
돌봄, 보호, 휴식지원	64,515	30.8	57,317	29.9	7,198	40.4
교육, 문화, 여가활동지원	24,992	11.9	21,345	11.1	3,647	20.5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21,373	10.2	18,435	9.6	2,938	16.5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제공	12,543	6.0	11,394	5.9	1,149	6.5
전체	209,497	-	191,700	-	17,797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 발달장애인 주 보호자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주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5.2시간이며, 지적장애인 주 보호자는 5.0시간, 자폐성장장애인 주 보호자는 6.9시간이다.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여 돌보는 경우는 7.6%로 지적장애인 주 보호자는 7.3%, 자폐성장장애인 주 보호자는 10.5% 이다.

<표 12> 주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0시간	24,678	11.8	23,734	12.4	944	5.3
1~2시간	68,750	32.8	64,627	33.7	4,122	23.2
3~6시간	61,672	29.4	55,641	29.0	6,031	33.9
7~12시간	38,570	18.4	33,735	17.6	4,834	27.2
12시간 초과	15,828	7.6	13,963	7.3	1,865	10.5
전체	209,497	100.0	191,700	100.0	17,797	100.0
평균 돌봄 시간	5.2시간		5.0시간		6.9시간	
응답 추정 수	209,497		191,700		17,79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 지적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현황

- 지적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다.

이용현황을 보면,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및 할인이 가장 많은 76.6%, 그 다음 통신 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으로 76.1%,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이 72.3% 으로 나타났다으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지원은 0.0%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예상보다 저조한 15.4%이며,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는 7.0%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지적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현황

순위	복지사업	이용현황(%)
1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및 할인	76.6
2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6.1
3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2.3
4	세금 공제 및 면제	50.1
5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42.8
6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36.5
7	장애인 연금지원	33.9
8	발달재활서비스	20.4
9	경증장애수당	18.8
10	장애인 일거리 지원	16.2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5.4
12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14.3
13	장애아동수당	13.3
14	장애인 의료비지원	12.8
1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0.8
16	장애검사비지원	9.7
17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9.4

18	언어발달지원	8.1
19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7.0
2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3.4
21	장애인 생활 도우미	3.3
22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2.9
23	아동양육수당	2.4
24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교부	1.4
25	노인장기요양보험	1.1
26	가족휴식지원	0.8
27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0.3
27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0.3
2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지원	0.0
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0

※ 통계청(2022)

□ 자폐성장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현황

- 자폐성장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은,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으로 87.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 85.2%,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및 할인이 84.9%로 나타났다. 이용실적이 가장 저조한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 각각 .00%로 이용 자폐성장장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폐성장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현황

순위	복지사업	이용현황(%)
1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87.7
2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85.2
3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및 할인	84.9
4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81.6
5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1.3
6	발달재활서비스	65.8
7	세금 공제 및 면제	65.3
8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1.8
9	장애인 연금지원	28.7
10	언어발달지원	27.8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2.9
12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21.8
1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15.7
14	아동양육수당	11.8
15	장애아동수당	10.0
16	장애인 일거리 지원	9.8
17	장애인 의료비지원	9.7

18	장애검사비지원	7.6
19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7.5
20	가족휴식지원	5.2
21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교부	4.5
22	경증장애수당	3.2
23	장애인 생활 도우미	2.9
24	노인장기요양보험	1.1
2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0.9
26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0.5
27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0.3
27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0.0
2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지원	0.0
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0

※ 통계청(2022)

□ 지적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지적장애인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 <표 15>와 같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소득보장으로 39.9%, 고용보장이 17.9%, 의료보장이 15.4%, 주거 보장이 5.1%의 순으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지적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순위	요구사항	요구율(%)
1	소득보장	39.9
2	고용보장	17.9
3	의료보장	15.4
4	주거보장	5.1
5	보육, 교육보장	4.5
6	장애인건강관리	4.4
7	장애인 인식개선	3.7
8	장애인 인권보장	3.2
9	이동권 보장	3.1
10	문화여가 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1.5
11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보장	1.4
12	재난안전관리	0.0

※ 통계청(2022)

□ 자폐성장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자폐성장장애인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소득보장이 39.9%, 보육, 교육보장이 18.3%, 의료보장이 16.3%의 순으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자폐성장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순위	요구사항	요구율(%)
1	소득보장	39.9
2	보육, 교육보장	18.3
3	의료보장	16.3
4	장애인 인식개선	9.2
5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보장	6.4
6	장애인 인권보장	5.6
7	고용보장	4.3
8	주거보장	3.8
9	이동권 보장	2.9
10	문화여가 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2.1
11	장애인건강관리	1.4
12	재난안전관리	0.0

※ 통계청(2022)

1.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요 제도 및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정책 전반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본 모니터링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을 토대로 2018년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으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돌봄서비스가 기획되었다.
- 본 계획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대해 알아본다.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다.
- 영유아기
 - 발달장애 조기 진단 및 관리 체계 구축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하며, 2019년 영유아 정밀검사지원 대상은 2,000명이다.
 - 발달장애 진단 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재활·치료,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접근성 강화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5년간 60개소 신설)로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 영유아 양육 역량강화 등 조기개입 체계 구축
 -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가이드라인)’ 을 마련, 부모 매뉴얼과 함께 소아과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 멘토링 등 발달장애 영유아의 부모 교육 지원
 -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돕고 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을 지원한다.
 - 부모교육, 동료부모상담, 부모 자조모임 양성 등 교육 지원을 확대(‘19년 3,000명) 한다.

□ 학령기

- 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 2019년 4,000명
 - 청소년 방과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에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 방학기간 복지관·장애인단체 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방학기간 돌봄 사각지대를 개선한다.
-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교육 교원 증원
 - 특수학교 23개교 이상 신설, 특수학급 1천개 확충하여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등 특수교육 교원 증원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훈련 강화
 -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18년 48개 학교 → ‘22년 139개 학교) 한다.
 - 장애학생의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산, 센터 1개소 당 고용연계 직업훈련: 80명, 직업체험: 800명으로 확대한다.

-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위한 부모역량 강화
 - 성인전환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
 - 장애학생 대상 ‘진로지도 → 능력평가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원·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 간 협업을 통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장년기

- 주간활동(커뮤니티케어)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복지절벽 상태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중케어서비스를 지원한다.
 - ‘19년 1,500명 대상 주간활동 바우처 주22시간(월 88시간)을 제공, 예산은 11,462백만원.
 - ‘22년 최중증(전체의 10%) 성인 발달장애인 1만 7000명까지 확대한다.
 -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 ‘19년 사업수행 모델 개발, 20년에 임대주택 50호로 시작, 연차별 확대추진을 검토한다.
- 시설거주 발달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모델 마련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19~‘20년, 4개 시군구 65명)한다.
 -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한다.
-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촉진
 -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을 직접 ‘동료지원가’로 참여시키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 지역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등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사 및 구직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에 맞춤형 직업 훈련과 일자리 지원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확대한다.
 - 훈련-취업 연계로 취업성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지원인원 확대(2,500천명 → 5,000명), 현장훈련기간 및 적응지도기간을 연장한다.
- 고용 유지 지원, 사업장 인식 개선
 - 부수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확대한다.
 - '18년 1,200명 → '19년 3,000명 → '22년 1만명으로 증원한다.
 - 직장내 의사소통 지원, 사업장 내·외 이동 지원 등 부수적 업무를 지원한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강사 활동 지원 =>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를 조성한다.

□ 중노년기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발달장애인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한다.
 - 중증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 확대한다.
- 장애인연금 확대 등 소득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
 - 발달장애인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 관리를 추진한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공신탁사업 T/F 구성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전주기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개설
 - 발달장애인의 자해, 타해 등 문제행동 치료 지원을 위하여 전문코디네이터를 갖춘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2개소(부산,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로 8개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 거점병원은 지역내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다른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다른 지원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치료-재활에 기여한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발달장애를 비롯한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한다.
 - 2018년 충남권(대전)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 법률지원 확대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을 확대('18년 400명 → '22년 1,000명)하여 일상생활 속 자립을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법률자문)─복지부(대상자 발굴)─모금기관(재원)' MOU 체결을 추진한다.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성교육 강화
 -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역량을 갖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전문가를 양성한다.
 - 성교육전문가가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강사 대상 보수교육을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정서적 지원 강화
 - 가족 부담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부모·가족 휴식지원서비스(발달장애 가족의 심리 상담, 자녀-부모 동반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를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2년 2만명까지 점차 확대한다.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사업목적과 근거

- 사업목적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 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용어

- 주간활동 /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간활동 이용자 : 성인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격을 확대하고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 최종증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 등이 있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주간활동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주간활동 협력기관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계약 체결 등)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 주간활동 제공인력
 - 전담 관리인력 :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주간활동 계획, 조정, 연계 등 서비스 전반의 코디네이터, 주간활동 지원인력의 슈퍼비전,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사업 운용에 따른 행정·사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주간활동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 발달장애인 서비스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상근을 원칙,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와 같은 유사경력자들도 반드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지원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는 14,8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표 17>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85시간	125시간	165시간
활동지원	-	△22시간	△56시간
총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 활동지원 급여 조정 및 2022년 확대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 조정(감액) (2021년 기준)

□ 지원인원과 예산 및 이용자 집단 구성

- 2022년 목표: 10,000명
-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서비스(바우처) : 월 44→ 85시간 / 월 88 → 125시간 / 월 120→ 165시간
- 예산 : 2021년 913억원 → 2022년 1,408억원
- 기준단가 14,800원(예산편성단가)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2인 그룹 100%, 3인 그룹 80%)
- 1인 집중지원서비스 단가 22,200원(예산편성단가의 150%, 7,400원 가산)

- 이용자 집단 구성

-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3인(4인 취소) 1개 그룹을 담당,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도전적 행동 최종증발달장애인 2인 그룹 1개 이상 구성, 전체 이용자 20% 이상 최종증발달장애인 참여를 의무한다.

□ 급여제공 시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제공하며, 토/일요일 서비스제공 불가, 법정 공휴일 지원은 제외한다.
- 이용형태 : 야간시간은 지원되지 않고,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 포함, 제공기관에서 차량운행 가능하다.
- 다른 제도 및 급여와의 관계 : 활동지원동일 시간에 제공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직업 훈련 등 타제도 지원 대상자는 주간활동 제공 불가, 주간보호시설 등 주간활동 서비스 외 기관 서비스 대상자는 주간활동 제공 불가하다.

<표 18> 2022년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지원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10,000명('22년)
제공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형(125시간)·단축형(85시간)·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제공인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이수 必
제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서비스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단가 14,800원(예산편성단가)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2인그룹 100%, 3인그룹 80%) • 1인 집중지원서비스 단가 22,200원(예산편성단가의 150%, 7,400원 가산) 																
활동지원 급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축형</th> <th>기본형</th> <th>확장형</th> </tr> </thead> <tbody> <tr> <td>주간활동</td> <td>85시간</td> <td>125시간</td> <td>165시간</td> </tr> <tr> <td>활동지원</td> <td>-</td> <td>△22시간</td> <td>△56시간</td> </tr> <tr> <td>총급여량</td> <td>+85시간</td> <td>+103시간</td> <td>+109시간</td> </tr> </tbody> </table>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85시간	125시간	165시간	활동지원	-	△22시간	△56시간	총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85시간	125시간	165시간														
활동지원	-	△22시간	△56시간														
총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협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간활동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외부활동을 지원 																

□ 사업추진 체계



<그림 1>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체계

□ 주간활동서비스 정책 내용 분석

-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활동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2016년 -2017년 시범사업 기간을 걸쳐 2019년 3월부터 본 사업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2019년 8월부터 만 12세 ~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 정책분석으로는 지원 대상, 제공시간, 제공기관 및 인력, 서비스단가를 중심으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지원 대상의 경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최종증장애인 20% 이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둘째, 제공 시간은 기본형(125시간), 단축형(85시간), 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공시간은 현재 활동지원급여와 연동해서 설계되어 있는데, 단축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차감이 없지만, 기본형과 확장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40시간, 72시간에 해당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한다.
 - 셋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경우, 제공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하여 운영하며, 제공인력의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공서비스로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을 이용하며, 서비스는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외부활동은 30%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서비스 단가의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기준단가는 14,800원으로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를 지급하고 있다. 즉, 2인 그룹은 100%, 3인 그룹은 80%, 4인 그룹은 70%이다. 한편, 최종증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예산편성단가에서 7,400원 가산하여 22,200원을 지급하고 있다.

• 2021년 7월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현황³⁾

- 종사자의 경우, 40대가 30.5%, 50대가 30.6%로서 평균 연령이 43.6세로 나타나 전체 종사자의 61.1%가 4~50대 중장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의 경우, 20대가 54.9%로 나타나 이용자의 과반수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1.8세로 나타났다.
- 한편, 40대 이상 이용자도 19.9%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하여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최중증발달장애인 비율이 42.7%로 나타나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급여유형은 확장형 45.4%, 기본형 37.3%, 단축형 16.6%로 나타나 확장형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19> 주간활동서비스 정책 모니터링 분석틀에 따른 결과

구분	정책 주요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 대상	실제 목표 대비 이용자 비율 확인 * '22년 최중증(전체의 10%) 성인발달장애인 1만 7000명까지 확대 - 전체 이용자 20% 이상 최중증발달장애인 이용 현황 - 도전적 행동 장애인 최중증발달장애인 2인 1그룹 이용 현황
서비스 이용절차	-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공공 기관에 신청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것은 유사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약이 없이 서비스를 지역 민간기관에 의뢰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임
서비스 원칙	- 직접 지불과 같이 유연화는 아닌 바우처 방식
서비스 내용	- 외부 활동 기준 낮음, 다양한 서비스 내용 부족
서비스 이용	- 사람중심 계획 미흡, 이용자 선택권 제약
서비스 비용	- 그룹별 서비스 단가 다양성 부족
서비스 제공기관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없고 거의 대부분 비영리 단체가 운영, 서비스 질 관리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장애인관련 전공에 대한 학위 취득 요구하지 않음. 지원인력은 활동지원사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

3)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2021년 상반기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 내용을 요약한 것임

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019.9.2. 시작)

□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이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2일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92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한다.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 서비스 대상 및 지원인원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학생,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목표 : 10,000명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한다.
- 방과후활동은 이용자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방과후활동시간(09시~21시)과 주간활동시간(09시~18시)이 겹치지 않는 경우 기존 서비스 제공 공간 활용 가능하며, 제공시간이 겹치는 경우 기존 공간과 분리된 방과후활동 공간 마련이 필수이다.

□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 14,8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표 20>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단가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시간당	14,800원	13,320원	11,840원
그룹전체	29,600원	39,960원	47,360원

□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 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제공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1년 이상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후활동 교육 이수 必

<표 21> 방과후활동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예시

영역	개요	예시	
취미 여가 활동	-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각자에게 맞는 취미·여가활동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음악활동	- 사물놀이, 난타, 악기, 중창단 등
		체육활동	- 축구, 볼링, 탁구, 태권도, 헬스, 에어로빅, 사이클, 방송 댄스 등
		배움활동	- 컴퓨터, 외국어, 요리, 미술, 공예,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생태활동	- 원예, 애완동물 키우기 등
		힐링활동	- 산책, 산행, 레크레이션, 음악 감상, 독서, 보드 게임 등 또래 놀이 활동 등
		기타활동	-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이 희망하는 취미여가 활동 등

영역	개요	예시	
직업 탐구 활동	-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강점을 찾는 등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나가기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활동 제공	직업이해	- 일의 개념과 가치, 다양한 직업의 세계, 나의 직업적 강점 탐색, 미래의 나의 모습, 선배 직업인과의 만남, 구직기술(모의면접 등), 다양한 지원기관 이해 및 정보수집
		직업체험	- 자격증 취득, 다양한 직종 교육 및 훈련, 현장실습, 현장(사업체) 견학 등
		기타	-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직업탐색 활동
자립 준비 활동	- 발달장애 청소년의 기본적인 자립생활능력을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제공	지역이해활동	- 지역사회 이해와 시설 이용,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등
		관계형성활동	- 지역주민 또는 비 장애 또래학생 등과의 통합 활동 등
		자기표현활동	- 미술,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기 의사 표현 훈련, 자치회의 개최 등
		미래계획활동	- 주거, 직업, 여가, 가사, 금전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등 미래 계획 설계 및 준비 등
		기타활동	-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준비 활동 등
관람 체험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성 증진과 신체적, 정서적 감각 향상을 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청각 활동과 체험 활동 제공	관람활동	- 연극, 영화, 뮤지컬, 미술, 운동 경기,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및 스포츠 경기 등 관람
		체험활동	- 특정 주제로 진행되는 체험 활동 및 교육 참여 등
		기타활동	-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관람체험 활동 등
자조 활동	-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 활동 기회 제공	주도활동	-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 하는 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 이때 제공인력은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해 그룹구성원 독려, 정보제공, 필요한 제반 준비 등의 조력인 역할 수행

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라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로서,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 제55조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의 2(기본원칙), 제5조(신청자격), 제6조(신청), 제12조(수급자의 유효기간), 제22조의 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제1장(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제2장(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3장(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 주요 용어

- 활동지원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 신체활동 지원에는 개인위생(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관리, 세면, 배설, 환복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체위 변경,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실내 이동(휠체어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등) 등이 있으며,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의 가사활동도 지원한다.
- 이 외에도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과 같은 이동보조 서비스도 제공되며 그 밖에 수급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방문목욕 :
 - 활동지원사가 아닌,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로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한다.
- 방문간호 :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 또는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을 제공한다.

□ 서비스 대상 및 방법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다. 이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되, 3년의 유효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만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제한된다⁴⁾. 다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었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급여 일부지원이 가능하다(「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5조 신청자격), 2021년 1월 시행).
- 원칙적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장기요양등급판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활동지원사는 해당 특성을 이해하고 활동지원 시 갖춰야 할 언행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정 지침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표 22>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시 기본사항

장애유형	기본사항
지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인지수준과 일상생활능력을 잘 파악한다. - 사전에 이용 당사자와 가족 및 주변사람들에게 욕구조절이 잘 안되거나 특정 음식이나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사회적 규칙이나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일관된 자세로 대한다. - 가능한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묻는다. -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 이용자를 존중한다. -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 응답을 들어야 할 때는 선택의 폭을 좁혀서 질문한다. - 말보다는 사진이나 그림 등 보조물을 활용한다.

4)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자폐성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비언어적 행동을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 자폐성장애의 경우 각자의 능력과 특징이 다르므로 관찰과 상호이해를 통해 이용자의 개별특성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 시각 자극, 청각 자극, 피부 접촉 등을 감지할 때 비장애인과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내적 욕구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짧고 간단한 대화를 통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한다. -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답변을 강요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 필요시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한다.
-------	---

※보건복지부,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때에는 지원시간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차감되는 금액이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 특별지원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는 동거가족 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이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한도액은 1,185,000원,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월 한도액 297,000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주간활동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 약 2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차감하고, 주간활동 확장형의 경우 활동지원 약 56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차감한다.

<표 2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간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원)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
2구간	435이상 ~ 465점 미만	6,660,000
3구간	405이상 ~ 435점 미만	6,217,000
4구간	375이상 ~ 405점 미만	5,773,000
5구간	345이상 ~ 375점 미만	5,329,000
6구간	315이상 ~ 345점 미만	4,885,000
7구간	285이상 ~ 315점 미만	4,440,000

8구간	255이상 ~ 285점 미만	3,997,000
9구간	225이상 ~ 255점 미만	3,553,000
10구간	195이상 ~ 225점 미만	3,109,000
11구간	165이상 ~ 195점 미만	2,665,000
12구간	135이상 ~ 165점 미만	2,220,000
13구간	105이상 ~ 135점 미만	1,777,000
14구간	75이상 ~ 105점 미만	1,333,000
15구간	42이상 ~ 75점 미만	889,00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697,000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⁵⁾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내용임

□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특징

-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활동지원사는 해당 특성을 이해하고 활동지원시 갖춰야 할 언행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림 2>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체계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소개 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

□ 제도 이용현황

-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0주년 성과보고서를 발표하며 2007년 1만 5,000명이었던 서비스 이용자가 2021년 10만 명을 넘었다고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생활도우미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조사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 정도가 낮아진 경향을 보여주었다.
- 장애인실태조사는 전국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었다. 2007년 근거법 개정 이후로는 3년마다 실시하였으며 2020년 9번째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통계

(단위: 명, 개소)

구분	수급자*	이용자	활동지원기관 수 (활동지원+방문목욕+방문간호)
서울	20,109	17,025	137
부산광역시	7,269	6,361	65
대구광역시	5,024	4,094	34
인천광역시	5,980	4,942	41
광주광역시	4,208	3,781	31
대전광역시	4,146	3,709	22
울산광역시	1,529	1,255	11
세종특별자치시	501	396	7
경기도	23,867	18,570	191
강원도	2,985	2,303	50
충청북도	3,297	2,700	35
충청남도	4,508	3,761	57
전라북도	4,045	3,209	58
전라남도	4,364	3,634	75
경상북도	4,929	3,769	64
경상남도	7,319	6,060	94
제주특별자치도	1,489	1,161	10
계	105,569	86,730	982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통계정보(2020.9.24.수정본)

<표 25>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7.9	9.5	13.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1	3.2	6.9
노인장기요양보험	5.2	5.7	7.0
장애인 생활도우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서비스 등	-	1.2	3.0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표 26> 장애인 일상생활 시 도움 충분도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연령별 응답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충분함	58.9	63.6	54.9	53.8	59.1	51.7
부족함	41.1	36.4	45.1	46.2	40.9	4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로 돌봄지원 분야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 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에 대한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 분야 복지사업 이용 경험률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에서 지적장애 21.5%, 자폐성장애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7>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률

(단위: %)

사업분야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돌봄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1.5	35.8
	장애인 생활도우미	1.6	0.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2	0.0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6.5	12.5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0.4	1.7
	가족휴식 지원	1.1	1.8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교육 지원	0.7	4.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0.2	0.2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률’

-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항목에서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매우 만족’ 보다는 ‘약간 만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의 경우 두 응답간의 답변 비율이 2배 이상 차이났다.

<표 28>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구분	척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매우 만족	36.6	23.4
	약간 만족	49.6	52.0
	약간 불만족	10.7	20.4
	매우 불만족	3.1	4.1
	소계	100.0	100.0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만족도’

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서비스

□ 사업목적과 근거

- 사업목적 :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특성의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공공후견제를 도입하였다.
- 사업근거 : 「민법」 제14조의 2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추진 경과 :
 - 장애인·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04.10)
 -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선정(‘07.12)
 -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2) 및 시행(‘13.7)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13.9 ~ ‘14.1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고시(‘16.7 ~ ‘22.12)

□ 사업 내용

- ‘공공후견’이란 후견이 필요한 누구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재정적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발달장애인 중 특정후견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공공후견인제도 이용이 가능하다⁶⁾.
-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후견인지원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관리와 시설입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등)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어 그들의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를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정 진행을 돕고 그 비용(후견 심판 절차비용 및 후견인활동비)을 지원한다.
- 공공후견인은 ‘본인 의사 존중’, ‘잔존능력의 존중’, ‘필요성·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 피후견인이 후견을 통해 다른 사회 구성원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도의 목적이 있으며, 주체적으로 후견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현재 피후견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체·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후견인이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후견 개시 전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사적 위임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미흡할 경우 비로소 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

<표 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사업의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 600건, 공공후견인 활동 : 1,263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9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 비용 미지원)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1명의 후견인이 다수의 피후견인을 후견할 경우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후견법인가 논의하여 지급(단, 지급액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6)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인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선정방식	- 읍, 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 군, 구에서 후견 필요성 조사,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인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정기보고서 점검(매월제출,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시, 군, 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업무 시, 후견법인과 중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협조를 구하여 지도, 점검 가능

※보건복지부, 2022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 서비스지원

-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장애를 최대한 초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발달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시행,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등의 의무를 진다(발달장애인법 제4조). 이와 같은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 2022년 기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개소, 지역(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7개소로 총 18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업무로는 ①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자문, ② 공공후견인활동 감독지원, ③ 공공후견인서비스 인식개선 및 관련 활동 등이 있다.
-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자문에는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후견인후보자 추천 및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사회조사보고서, 후견심판청구서, 후견·감독계획서 등) 점검 및 자문, 후견심판청구 및 전자소송 안내,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지원에서는 정기보고서 점검 지원, 후견활동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지원, 사후조치(기타 변경청구 등) 지원, 공공후견지원 모니터링, 특정 후견 종료 및 지속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공공후견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지자체와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공공후견인 선임, 가정법원 후견심판 청구,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공공후견인사업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표 30>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와 역할

<p>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34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 동법 제9조 제3항(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동법 제36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 - 발달장애인 관련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계획 수립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34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에 대한 감독 - 동법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 2022년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사업 지원

- 공공후견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공후견법인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을 받아 목표 인원에 달하는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등 사업을 수행한다.

-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모집·교육하고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접 후견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교육,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후견인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공공후견법인은 지차체가 반기별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최한 간담회에 참여하여야 하고,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분기별로 업무 관련 사항을 필히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그림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 중앙발달지원센터, ‘공공후견인지원사업’ 브로셔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본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어 신청가능하다.
- 반면,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이거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이다(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조).

□ 제도 이용현황

- 앞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 분야 복지사업 이용 경험률을 살펴본 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이 지적장애 21.5%, 자폐성장애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은 각각 0.2%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3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사업 이용 경험률 (단위: %)

사업분야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돌봄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1.5	35.8
	장애인 생활도우미	1.6	0.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2	0.0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6.5	12.5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0.4	1.7
	가족휴식 지원	1.1	1.8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교육 지원	0.7	4.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0.2	0.2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률’

- 다음 <표 32>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만족도이다.

<표 32>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만족도 (단위: %)

구분	척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매우 만족	36.6	23.4
	약간 만족	49.6	52.0
	약간 불만족	10.7	20.4
	매우 불만족	3.1	4.1
	소계	100.0	100.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매우 만족	100.0	100.0
	약간 만족	0.0	0.0
	약간 불만족	0.0	0.0
	매우 불만족	0.0	0.0
	소계	100.0	100.0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만족도’

6.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 사업 목적

- 주거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과 어울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1항, 2항
- 「장애인 권리협약」: 제28조 2항
- 「장애인주거지원법」: 제1조 및 3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주거기본법」: 제2조, 제3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제3조에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서비스 의미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인에게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만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함에도 그간 정부의 정책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주거빈곤에 놓이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 주거문제는 경제와 복지의 효용성이라는 상충적 관계에 의해 주류시각에서 분리된 상황으로, 2000년대 들어 장애인들의 거듭되는 권리주장과 사회인식의 변화로,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한 채 보호하고 재활하는 패러다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로 전환하고 있다(구만서, 2021).
- 장애인의 자립은 일정부분 타인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자립이란 의미도 주거지에서 타인의 지원을 받아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 현재 장애인의 주거자립을 위한 많은 정책들 중 탈시설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있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정상화(normal)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상화(normal)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정상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자는 의미이다.

-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전환(중간)주거로, 전환(중간)주거에서 혼자 혹은 마음 맞는 사람과 생활하는 독립주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탈시설의 의미는 광의적인, 협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 광의적 탈시설 의미는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인권,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 협의적 탈시설 의미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의 보편적 주거 공간에서 좀 더 선택권이 많은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장애인 자신이 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서비스 현황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서비스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3종 지원 서비스 현황

연번	사업명	21년도 이용 현황			22년도 공급 목표
		주택 (호)	이용자(명)		신규 공급 (호)
			전체	발달장애인	
	합계	390	895	780	74
1	자립생활주택 운영	63	110	88	2
2	지원주택 운영	158	144	121	70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69	641	571	2

※ 서울시 2021년 12월 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에 의해 전국 건설과 분양·임대는 아래 <표 34>와 같다.
- 전국의 2021년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분양된 주택은, 경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50년)가 159가구, 국민임대가 481가구, 영구임대가 19,730가구, 행복주택이 1가구이며, 중증장애인은 공공임대(50년)가 166가구, 국민임대가 1,660가구, 영구임대가 25,031가구, 행복주택이 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전국의 약 19.3%에 해당하는 주거를 분양·임대하였다. 경증장애인은 공공임대(50년) 32가구, 국민임대 9가구, 영구임대 3,699가구를 중증장애인에게는 공공임대(50년) 25가구, 국민임대 42가구, 영구임대 5,308가구를 분양 임대하였다.
- 경기도는 전국물량의 약 17.35%로 경증장애인은 공공임대(50년) 26가구, 국민임대 144 가구, 영구임대 2,963가구, 행복주택 1가구를 중증장애인은 공공임대(50년) 44가구, 국민임대 633가구, 영구임대 4,384가구, 행복주택 1가구를 분양·임대하였다.

<표 34> 전국·서울·경기 주거약자 의무건설 장애인 입주상황

(단위: 가구수)

지역	유형	장애정도		합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전국	소계	20,371	26,859	47,230
	공공임대(50년)	159	166	325
	국민임대	481	1,660	2,141
	영구임대	19,730	25,031	44,761
	행복주택	1	2	3
서울	소계	3,740	5,375	9,115
	공공임대(50년)	32	25	57
	국민임대	9	42	51
	영구임대	3,699	5,308	9,007
	행복주택	-	-	-
경기	소계	3,134	5,062	8,196
	공공임대(50년)	26	44	70
	국민임대	144	633	777
	영구임대	2,963	4,384	7,347
	행복주택	1	1	2

※ 국토부 2021년 재구성

- 주요 선진국가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교는 아래 <표 35>와 같다.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한 국가는 네델란드 32%, 오스트리아 24%, 덴마크 19%, 의 순으로, EU 평균 9.4%, OECD 평균 8%에 비해 작은 양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보이고 있다.

<표 35> 주요 선진국가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교

(단위 : %)

한국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독일	OECD 평균	EU 평균
7.1%	32%	24%	19%	18%	18%	16%	9%	6.1%	5%	8%	9.4%

※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2020.

- 장애인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다음 <표 36>과 같이 장애인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를 취한다.

<표 36> 공공임대주택의 형태

구분	내용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 주거정책의 다른 목적 중 하나인 주거수준 향상은 주택의 물리적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달성할 수 있다. 주택의 물리적 향상은 면적과 방수 증가, 주택유형 변화, 최저 주거기준 달성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은 주요 시설과의 입지, 교육환경, 치안 등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오민준 외, 2019).
- 우리나라의 주거상황은 2008년 보급률 110%로 주택부족에서 벗어났으며, 주택시장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박천규 외, 2009).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유형별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주거보장 요구사항이 5위였으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이 3위로 나타났다(구만서, 2021).

□ 서비스 유형

- 국가인권위원회(2011)는 장애인 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분리에서 통합으로, 의료모델로부터 사회모델로,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하였고,
 - 주거를 선택할 본인의 욕구와 선호도가 고려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주거유지가 어려워지며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에 기반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중요한 정책 기반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2013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차 계획에 의해 시설 변환사업과 더불어 탈시설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을 발표하였다. 본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 현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자립을 실행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룹홈, 서울시 지원주택,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등이 있다.

□ 그룹홈

- 장애인 그룹홈이란 지역사회거주 형태의 주거제공 서비스로, 4인~5인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일반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능력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지역사회거주프로그램이다.
- 자립적인 일상생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다 가족적인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나 생활지도원이 보호·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서울시는 ‘지역사회내에 있는 주택에서 소수의 지적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이에 필요한 도움(금전관리, 대인관계 등)을 생활보조원에 의해 지원 받는 생활형태로서 사회적 자립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사업’ 으로 정의하고 있다.
- 추진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에 의거한 공동생활가정으로 그룹홈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 「아동복지법」으로 1962년 1월 1일 시행을 하여 1981년 4월 13일 전부개정을 거친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주로 정인지체인과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지역내에서 소규모 그룹형태의 일반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지역사회거주프로그램이다.
- 범위 : 신체활동지원은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가사활동지원은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행위
 사회활동지원은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지원

□ 서울시 지원주택

-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개념이다.
- 추진근거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 제정)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 서울시는 170호('19년 기준)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2년 총 459호까지 3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 ('22년 248호)과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 ('22년 120호) 으로 나누어진다.
 - ‘공급형 지원주택’ 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 2019년에 68호를 공급했다. 2019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2020년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2년까지 총 248호로 확대 공급한다.
 - ‘비공급형 지원주택’ 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 '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양천)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2019년 3월 종료되었고, '21년에는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호, '22년에는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된다.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표 37〉 주거서비스 내용

주거서비스	내용
주택관련	주택서비스 신청, 주택 알선
생활지원	가사 유지·관리, 식사관리, 금전관리, 시간관리, 의사소통 지원, 이동 지원
관계지원	동아리·모임 연계
안전지원	안전 및 긴급상황 대응, 권리와 책무 이해, 인권침해 대응, 건강관리,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 등

- 입주대상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자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우선입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독립주거 (예정) 자

□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후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활동 지원한다.
- 추진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제 11조
- 입주대상 :
 -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 희망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 '09년 3호(6명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

<표 38>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유형 분석

구분	장애인자립생활주택(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다형)
입주대상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입주기간	기본 2년 최장 4년	
지원형태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경험과 자립생활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간헐적 지원형태 (본인 혹은 활동지원을 통하여 자기결정,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	공공임대주택 (다세대 주택 등 지역사회 주택활용) 1인 1실
입주지원	개별자립생활체험 및 사회적응 지원	개별자립생활체험 및 사회적응 지원
개소현황	29개	36개

주택유형	일반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인원	3명 / 주택당	2명 / 주택당
지원인력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 보조인력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게시관 2022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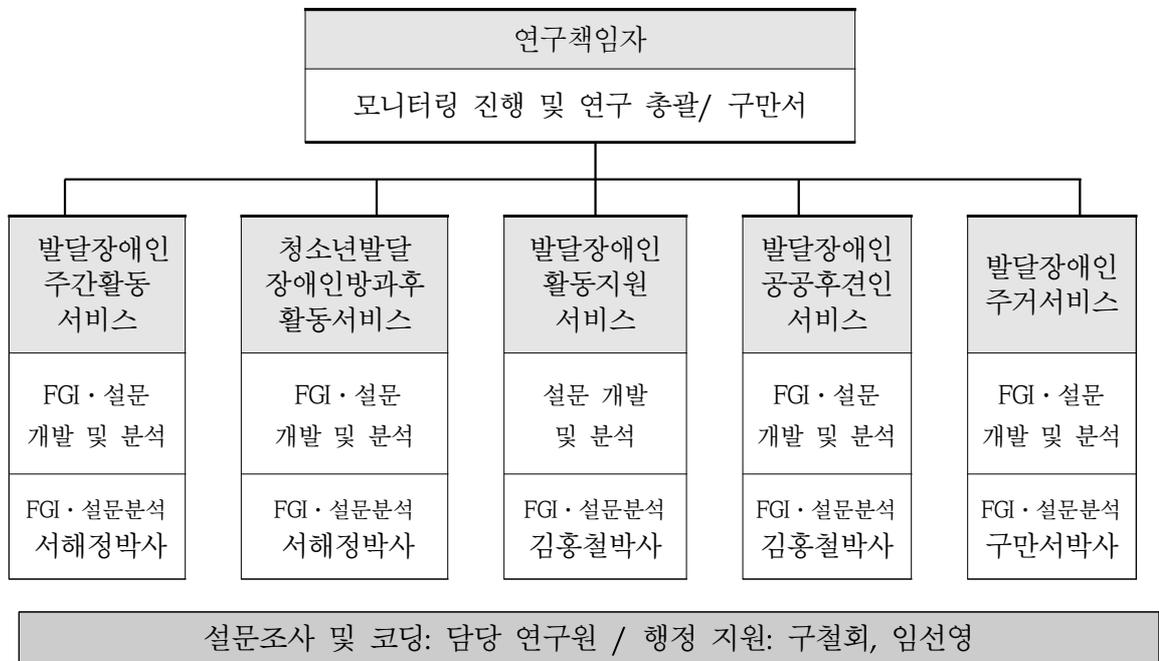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방법

Ⅲ.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방법

1 모니터링 체계 및 방법

□ 발달장애인 모니터링

- 모니터링 체계는 ‘함께하는 사회복지정책연구소’가 연구진, 보조인력 및 인권 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 현장방문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FGI 인터뷰와 줌(ZOOM)을 통한 종사자 인터뷰, 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설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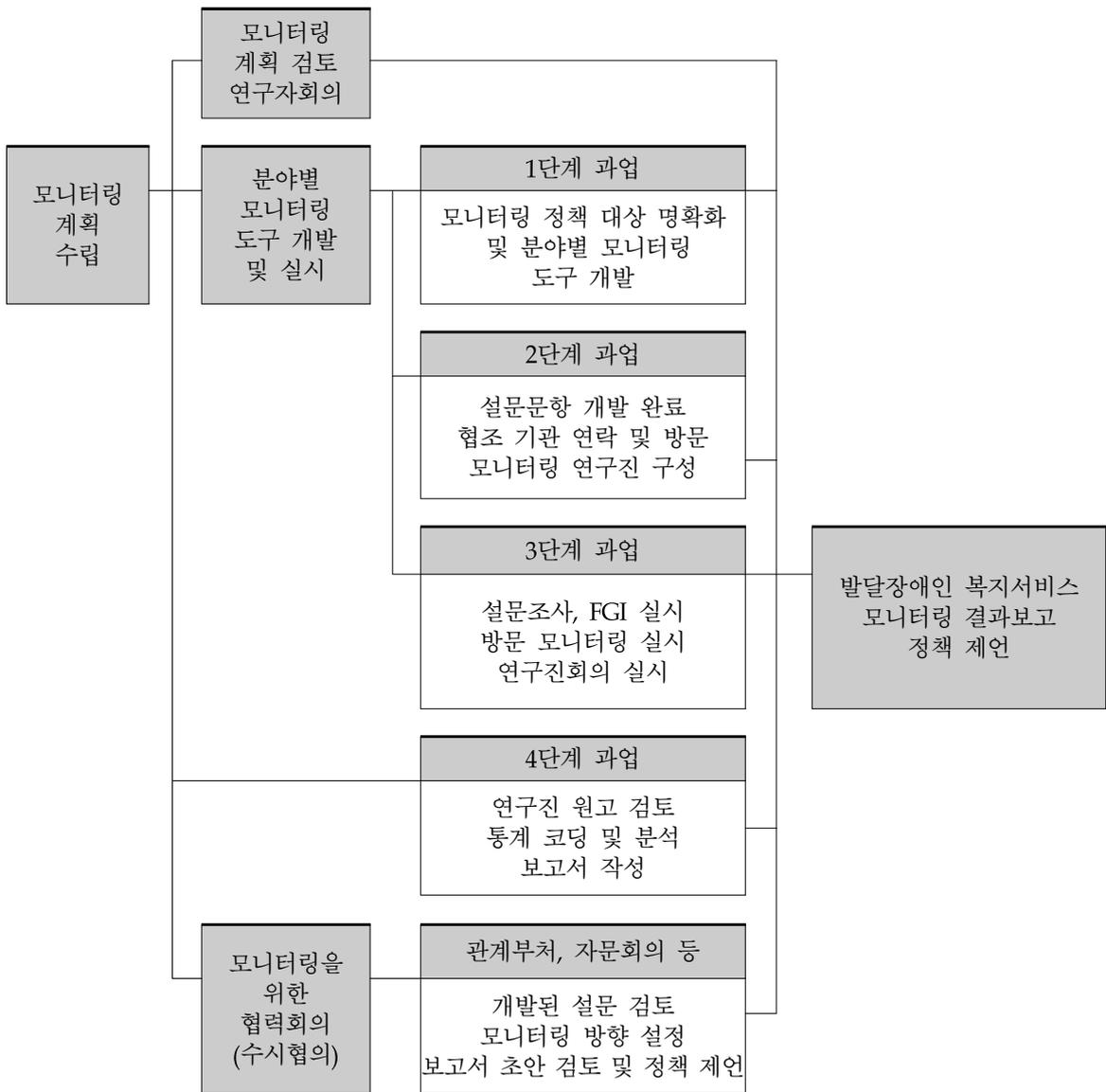
<그림 4> 모니터링 체계

□ 본 모니터링 방법은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혼합 사용하였다.

- 성과 모니터링은 정책이 달성하고자 한 바를 제대로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을 잘 이행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공후견인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각 영역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39> 발달장애인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영역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방법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주간활동이용 부모 주간활동제공기관	- 제공기관 종사자 FGI - 부모 개별 인터뷰, 부모 및 보호자 설문조사 - 제공기관 프로그램 현장 방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가서비스	- 성과 모니터링: 종사자 FGI - 프로그램 모니터링: 부모 및 보호자 설문조사
공공후견인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 성과 모니터링: 종사자 FGI 및 설문조사
주거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거자립정책	- 성과모니터링: 종사자 FGI - 프로그램 모니터링: 이용자 FGI, 부모 및 보호자 설문조사



<그림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2 분야별 모니터링

- 발달장애인 모니터링은 다음 <표 40>과 같이 진행되었다. 각 서비스 영역별 종사자에 대한 조사는 성과 모니터링에 해당하며, 이용자 및 부모, 보호자에 대한 조사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해당한다.
- 각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별로 연구진이 검토한 결과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공후견인서비스, 주거서비스는 FGI 인터뷰와 설문조사,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표 40>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별 모니터링 실시 현황

서비스별	방문조사·FGI	FGI (ZOOM)	설문조사
주간활동서비스	○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	○
활동지원서비스	○	-	○
공공후견인 서비스	○	○	○
주거서비스	○	○	○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니터링

- 주간활동서비스는 FGI와 설문으로 진행하며 대상자는 부모 및 보호자, 종사자로 하였다. 이때, 종사자는 당사자 활동 욕구사정,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적절성, 그룹활동지원 효과성, 지역사회 자원활용,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단가 등으로 진행하였다.
-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5월 17일~18일 이틀동안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1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주간활동서비스에 전한 전반적인 이용현황과 만족도 등을 살펴 보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4명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부모는 직접 대면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종사자 대상 FGI는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사용)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틀간 참가자 2명씩 총 2회, 약 1시간 30분 동안 실시되었다.

2.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 활동지원서비스는 종사자 FGI 인터뷰와 설문으로, 종사자와 부모 및 그 보호자로 진행하였다. 이때, 종사자와 부모 및 그 보호자에게는 서비스 적합성, 활동지원인, 제공시간, 전반적 만족도, 인권침해관련, 종합조사의 적합성 등으로 진행하였다.

□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6월 10일~21일까지 2회에 걸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 2명을 대상으로 각 1시간씩 대면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22년 6월 7일 ~ 6월 21일까지 2주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설문지를 활용하여 총2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조사 시 활동지원서비스의 정보접근, 제공시간 적합성, 인권침해사례,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서비스

□ 공공후견인제도는 공공후견인에게 FGI 인터뷰 및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공공후견인에게 후견활동내용, 후견인 양성교육의 직무적합성, 후견선정 과정과 절차의 한계, 피후견인의 의사반영 및 존중, 피후견인의 옹호나 지원체계 필요성, 피후견인에 대한 인식변화, 후견활동 수당 적절성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5월19일에 공공후견인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 1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비대면(zoom활용)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 공공후견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교육 내용의 적합성, 피후견인과의 의사소통,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22년 6월 7일 ~ 6월 16일까지 10일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총4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지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조사 시 공공후견인의 전문성 및 활동수당의 적절성, 활동내용, 선정과정의 어려움, 피후견인과의 의사소통, 인식 변화, 만족도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 주거서비스는 그룹홈, 서울시 지원주택,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FGI 인터뷰와 부모 및 보호자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 주거서비스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모니터링 FGI 인터뷰에 적용할 세부 내용은 주거유지,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옹호지원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주거자립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 주거유지는, 집 인식, 주거공간 안전, 생활관리, 주거관리 및 유지
- 일상생활지원은, 장보기, 음식물 조리, 주방정리, 청소, 금전관리, 소비생활지원 등
- 사회참여지원은, 교통수단 이용, 여가활동 계획 및 실행, 낮 활동(직장) 기관 이용 등
- 옹호지원은, 자기의사에 의한 선택지원, 선택과 책임, 자신과 타인의 권리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41> 인터뷰 구성 내용

유형	세부내용
주거유지	집 인식, 주거공간 안전, 생활관리, 주거관리 및 유지
일상생활지원	장보기, 음식물 조리, 주방정리, 청소, 금전관리, 소비생활 지원
사회참여지원	교통수단 이용, 여가활동 계획 및 실행, 낮 활동(직장)기관 이용,
옹호지원	자기의사에 의한 선택지원, 선택과 책임, 자신과 타인의 권리,

□ 그룹홈

- 그룹홈 FGI 인터뷰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은 현재 그룹홈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다.
- FGI 인터뷰에 참여한 그룹홈 이용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42>와 같이, 연령대는 10대가 1명, 30대가 1명, 40대가 2명이었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기간은 (참가자 3)의 경우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동시에 갖은 중복장애인으로 단기시설 이용이 총 19년, (참가자 4)의 경우도 유아 때부터 이용 기간이 총 12년, (참가자 1)과 (참가자 2)는 각각 6년과 4년이였다.

<표 42> 그룹홈 인터뷰 참가자

참가자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입소기간	비고
참가자1	여성	40	발달장애인	6년	그룹홈
참가자2	여성	44	발달장애인	4년	그룹홈
참가자3	여성	30	시각,지적중복장애인	19년	단기시설
참가자4	여성	16	발달장애인	12년	그룹홈

- 그룹홈 이용자들의 FGI 인터뷰는 2022년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1로 그룹홈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이용자들에게 미리 허락을 득한 후 분석을 위한 녹음과 현장 기록으로 진행하였다. 녹취는 모든 보고서류가 완성된 후 파기하였다.

□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치

- 지원주택은 탈시설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이다.
- 서울시 지원주택 FGI 인터뷰는, 서울시 지원주택에 근무하는 주거코치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주거코치는 00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지원주택을 관리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관리인으로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공급형과 비공급형으로 구분한다.
 - 서울시가 공급한 주택은 공급형으로, 장애인 자신이 구입하거나 임대한 주택은 비공급형으로 명칭하고 있다.
 - FGI 인터뷰한 주거코치 명단은 다음 <표 43>과 같다. (참가자 1)은 연령대가 60대이고 경력은 2년 공급형지원주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참가자 2)는 연령대가 50대이고 경력은 3년으로 비공급형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

<표 43>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치 인터뷰 참가자

참가자	성별	연령	유형	기간	비고
참가자 1	여성	65	주거코치 1	2년	공급형지원주택
참가자 2	여성	57	주거코치 2	3년	비공급형지원주택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지원주택 주거코치에 대한 FGI 인터뷰가 인터넷 줌으로 2022년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주거코치 2명을 1:1 FGI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코치 FGI 인터뷰 내용은 이용자들에게 미리 허락을 득한 후 분석을 위한 녹음과 현장 기록으로 진행하였다. 녹취는 모든 보고서류가 완성된 후 파기하였다.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 서울시 지원주택 FGI 인터뷰는 서울시 지원주택에 근무하는 주거 코디네이터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FGI 인터뷰에 참가한 서울시 주거 코디네이터의 특성은 다음 <표 44>와 같다. (참가자 1)과 (참가자 2)는 연령대가 30대로 근무경력도 같은 2년이였다.

<표 44>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인터뷰 참가자

참가자	성별	연령	유형	기간	비고
참가자 1	여성	31	주거 코디네이터 1	2년	공급형지원주택
참가자 2	남성	31	주거 코디네이터 2	2년	비공급형지원주택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코디네이터 FGI 인터뷰는 2022년 5월 2일 오후 2시부터 줌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이용자들에게 미리 허락을 득한 후 분석을 위한 녹음과 현장 기록으로 진행하였다. 녹취는 모든 보고서류가 완성된 후 파기하였다.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곳으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이다.
-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주택 FGI 인터뷰는 자립생활지원주택에 근무하는 주거 코디네이터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FGI 인터뷰에 참여한 주거 코디네이터의 특성은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인터뷰 참가자

참가자	성별	연령	유형	기간	비고
참가자	여성	31	주거코디네이터	5년	자립생활지원주택

- 자립생활지원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FGI 인터뷰는 2022년 5월 6일 오후 2시부터 00 자립지원생활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이용자들에게 미리 허락을 득한 후 분석을 위한 녹음과 현장 기록으로 진행하였다. 녹취는 모든 보고서류가 완성된 후 파기하였다.

□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센터 퇴소자

- 자립지원생활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곳으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이다.
- 자립생활지원센터 퇴소자는, 자립생활지원센터에 6년 정도 거주하는 이용인으로 퇴소한지 3년 정도 지난 장애인이다. 퇴소자의 특성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인터뷰 참가자

참가자	성별	연령	유형	기간	비고
참가자	남성	36	퇴소자	6년	자립생활지원주택

- 자립지원생활센터 퇴소자 FGI 인터뷰는 2022년 5월 6일 오후 3시부터 00자립지원생활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이용자들에게 미리 허락을 득한 후 분석을 위한 녹음과 현장 기록으로 진행하였다. 녹취는 모든 보고서류가 완성된 후 파기하였다.

□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센터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 자립생활지원센터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퇴소 직전의 상황으로 특성은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서울시 퇴소 직전의 장애인 인터뷰 참가자

참가자	성별	연령	유형	기간	비고
참가자	여성	51	입소자	7년	자립생활지원주택

- 자립지원생활센터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FGI 인터뷰는 2022년 5월 6일 오후 3시부터 00자립지원생활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이용자들에게 미리 허락을 득한 후 분석을 위한 녹음과 현장 기록으로 진행하였다. 녹취는 모든 보고서류가 완성된 후 파기하였다.
-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에게 현재 지원 서비스되고 있는 체계 중, 주간활동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공공후견인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주거서비스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 모니터링 의의는, 그동안 분절된 정책적 전달체계 문제 등으로 종합적인 발달장애인 정책이 논의되지 못해 왔으나, 본 모니터링을 기초로 하여 포괄적인 발달장애인 정책전달체계의 이슈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점과 개별 정책 중심이 아닌 5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IV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 모니터링 결과

IV.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1 분석자료의 개요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는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공후견인서비스, 주거서비스의 등 5개 분야에 대해 FGI 인터뷰와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응답자는 발달장애인 부모 1명, 종사자 4명을 FGI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부모 및 보호자 설문조사는 15명이 응답하였다.
- 활동지원서비스는 종사자 FGI 인터뷰 2명, 이용자 부모 및 보호자 설문조사에 25명이 응답하였다.
- 공공후견인서비스는 공공후견인 FGI인터뷰 1명, 설문조사는 43명이 응답하였다.
- 주거서비스는 이용자· 종사자 방문 FGI, 종사자 ZOOM 인터뷰 11명, 부모 및 보호자 설문조사에 34명이 응답하였다.

□ FGI 와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 발달장애인 인터뷰 참가자

(단위: 명)

서비스별	방문 FGI	ZOOM FGI	설문조사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	4	15
활동지원서비스	2	-	25
공공후견인 서비스	1	-	43
주거서비스	7	4	34
인원	12	8	117
총 인원	137		

□ 발달장애인 부모가 응답한 발달장애인 자녀의 공통상황은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발달장애인 인터뷰 응답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연령범주	성인(만 19세 이상)	26	76.5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8	23.5
성별	여성	13	38.2
	남성	21	61.8
장애유형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	5	14.7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17	50.0
	지적장애만 있음	12	35.3
이용중인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 동시 이용	9	26.5
	주간활동서비스만 이용	6	17.6
	활동지원서비스만 이용	19	55.9
전체		34	100.0

1. 부모 개별 인터뷰 결과

□ 당사자 특성 및 이용 현황

- 이용자는 현재 만 25세로 일반 초등학교 입학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전학했고, 이후 중학교에 특수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 후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어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다, 2019년 주간활동서비스가 생긴 이후 집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 다니고 있다.
- 처음에는 단축형으로 주 2회 사용하다가, 현재 확장형으로 주 5회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영서비스는 부모 자신이 직접 하고 있다.

□ 문제점

- 기관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내용 등은 잘 피드백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인력도 특수학교 교사와 비교했을 때 자격과 수준이 낮은 것 같다고 하였다. 실제 이전 활동지원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단순 보호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 보호자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수급자인 경우 월 80시간 이상 자녀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급자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만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인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케어하면서 자활사업(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녀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단축형도 월 85시간이라고 밝혔다.

□ 요구사항

- 성인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유일하게 이용기간이 65세 까지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근거리에서 없어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많은 제공기관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2. 제공기관 종사자 FGI 결과

□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 서비스 이용 연한과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이용자의 부담이 낮고 선호도가 높다.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고 적응이 빠르며, 기관에서 이용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더 적합한 활동을 제공한다면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
-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1: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다.
-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 기관 이용이 거절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시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낮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주간활동 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견

-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참석 저조
 - 10대 청소년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방과후 프로그램보다는 부모들이 발달재활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룹을 형성하기 어렵고 성인에 비해 오후 반나절이라 제공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 제공기관 차원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판정 심사표가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판정 심사표가 필요하다.
-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 차감문제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 많은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15구간(6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인정받고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을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56시간이 차감되어 4시간이 남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결과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차감이 없는 주간활동서비스 단축형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고 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최종증장애인 이용자 급여 인정의 어려움 발생
 - 최종증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이나 건강상태, 컨디션 등으로 인해 총 급여시간의 80% 이상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최종증 장애인 이용자의 급여인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 최종증장애 이용자에 대해서 인정급여 예외사항을 마련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제공 관련 의견

- 공간 및 시설마련의 어려움
 -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 가능한 여분의 공간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인원수 증가에 따른 공간(인당 3.3m²)확보가 어려워 적은 수의 이용자만 받을 수 있다.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규정에 맞는 공간과 시설마련이 어려움이 있다.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설장이 직접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설장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할도 수행하는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인건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사업비 10% 이상을 인건비로 정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가 충분히 보장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타 서비스 수준의 사업비 운영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장애인의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 활동지원사 경력 1년 이상,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경험이 있더라도 풍부한 낮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시설장 및 지원인력 대상 정기적인 교육 필요
 - 시설장의 장애인식과 전반적인 사업 이해를 높여서 서비스 운영 방향과 비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현재 초기 교육 이외에 보수교육에 대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도전적 행동 지원 방법, 지역사회 협력기관 발굴 등 실천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공유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료집 및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관련 의견

- 협력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 주간활동서비스의 지향과 맞게 외부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기관의 경우 외부활동이 어려움이 있다.
- 도심에서 벗어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인근에 발달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방문하더라도 지속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서비스 질관리에 대한 의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원기관 간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 단위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관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기초단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원기관 관리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기 보다는 센터에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자체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해야 하며, 제공기관 운영 등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 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 기관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추가해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 구체적인 장애인의 욕구사정 및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방법 등 지침 이행방법이 제공되어야 현장에서 질 높은 실천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세분화된 지침 이행방법, 지원 절차, 서식 등이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 주간활동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보 필요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 서비스의 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서비스 이용연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 성인 초기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해서 65세가 될 때까지 같은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이 향후 자립수준이 더 높은 활동(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평생교육센터 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서비스 전이계획을 마련되어야 하며 기관의 제공 서비스로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중단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한이 없는 주간활동서비스가 적합하지만 비교적 젊은 청년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는 서비스 전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용자의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 특성에 따라 원하는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 활동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연령별 선호하는 활동이 다르고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변처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성별의 지원인력을 선호하며, 이 외에도 거주지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거리, 프로그램 내용 등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인 사업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서 서비스 내용과 방향이 모호해 질 수 있다.

- 최종증장애인 지원의 어려움
 - 최종증장애를 포함한 중도장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추가적인 인력, 물리적, 환경적 지원(도전적 행동 지원, 바닥 난방, 리프트 카 등)이 필요하지만 제공기관에서 모두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 최종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능보강, 추가지원 없이 20% 의무 선정은 부담스러움이 있다.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인 장애 청소년이 이용하는 평일 재활 치료가 방과후활동보다 우선시 되므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대, 활성화 되기 어려움이 있다.
 -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이용 부모 및 보호자 양적 설문지 조사 주요 결과

-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 및 보호자 응답에 의하면, 주간활동서비스만 이용하는 발달 장애인이 6명(17.6%)이고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9명(25.6%)으로 나타났다.

<표 50>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
주간활동서비스만 이용	6	17.6
활동지원서비스만 이용	19	55.9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동시에 이용	9	26.5
전체	34	10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46.7%로 낮 동안 다른 갈 곳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이 괜찮아서가 26.7%, 이용기간에 제한이 없어서가 1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발달장애인 서비스 선택이유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
이용료가 부담 없어서	1	6.7
이용기간에 제한이 없어	2	13.3

유형	사례수	%
낮 동안에 다른 갈 곳이 없어서	7	46.7
일자리가 없어서	1	6.7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4	26.7
전체	15	100.0

- 현재 이용하는 주간활동제공기관을 선택한 이유에서는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 지원 특화 기관이라 신뢰가 가서가 전체의 7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20.0%로 나타났다.

<표 52> 발달장애인 제공기관 선택이유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
송영서비스를 제공해서	1	6.7
프로그램이 좋아서	3	20.0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 지원 특화된 기관이라 신뢰가 가서	11	73.3
전체	15	100.0

- 자녀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그룹형성(2인, 3인 4인 그룹 등)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그룹형성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발달장애인 이용자 선정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
예	11	73.3
아니요	2	13.3
잘 모름	2	13.3
전체		100.0

- 정부의 지침 상 현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있는 활동지원사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프로그램에 맞는 적절한 제공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54>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
예	15	100.0
전체	15	100.0

- 주간활동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제공기관의 공간의 접근성이나 위치 등에 대한 만족도 거의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서비스 제공기관 공간 및 접근성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
매우 만족	7	46.7
만족	7	46.7
불만족	1	6.7
매우 불만족	0	0
전체	15	100.0

- 정부의 지침 상 주간활동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현재 응답자의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주간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지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7%로 나타났다.

<표 56> 발달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인지도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
잘 안다	7	46.7
보통	7	46.7
잘 모른다	1	6.7
전체	15	100.0

- 현재 제공받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전반(제공인력, 정보제공, 공간, 접근성, 프로그램, 피드백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가 46.7%이고, 만족이 46.7%로 나타나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프로그램, 전달인력, 활동 공간 등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7> 주간활동서비스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
매우 만족	7	46.7
만족	8	53.3
전체	15	100.0

3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 제공기관 종사자 인터뷰 결과

□ 활동지원서비스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변화 여부

“제가(활동지원사) 활동지원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엄마가 여유가 생긴 거겠죠. ○○의 집에는 3명의 애들이 있어요. ○○의 엄마는 ○○을 챙기다 보니, 나머지 애들에 대한 케어를 잘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활동지원을 시작하면서 ○○엄마는 초등학생인 ○○의 언니와 오빠 등하교를 챙길 수 있고, 집안일도 낮에 좀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참가자 1)

“부모가 이혼하고, 아빠가 뺏일을 나가면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와요. 수입도 매우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략) 그래서 할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식당 하면서 ○○과 ○○의 언니의 양육비를 보태고 있죠. 제가 ○○의 등하교와 치료실을 데리고 다니니 할머니는 애들 걱정 안하고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저녁에도 식당을 하니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겠죠. (중략)”

(참가자 2)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손)자녀양육 양육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발달장애인 (손)자녀의 일정(학교, 치료, 가정보호 등)에 중심으로 보내다 보니,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이 소홀해지거나 여유시간 등을 가질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이 증가하거나 소득활동 및 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변화 여부

“○○의 할머니가 애를 키운다고 말했었죠? 솔직히 할머니가 장애를 가진 손녀를 얼마나 잘 케어를 하는데 어렵죠. ○○은 현재 정기적으로 치료실도 가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할머니가 기동성도 없고, 어떻게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나마 제가 ○○을 케어하게 되면서 치료실도 다니고, 아프면 할머니에게 말하고 바로 병원도 데려가고, 저녁밥도 챙겨주죠. 그러다보니 ○○의 상태가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참가자 2)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정기적인 치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 활동지원서비스로 인한 문제점

“장애아 부모들이 서로 바뀌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무슨 말씀이시죠?)
 “사무실에서는 잘 모를 텐데, 치료실에 가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략) 장애인 부모들이 서로 아이들을 바뀌서 활동 지원사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 치료실에 가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략) 사무실에서 그런 것을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참가자 1)

-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 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직접 발달장애인 (손)자녀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수급자(발달장애인)의 가족인 활동지원사의 활동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정액 대비 50%를 감액하여 제공한다. 이 조항으로 일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자녀를 활동지원 하는 것이다. 즉, 활동지원 급여를 100%로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부당이득 발견 즉시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월 한도액의 적용
 다.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다만,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기관에서는 자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활동이 안 돼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걸 예약하기도 어려워요” (참가자1)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병원을 예약해놔서 가야 하니깐. 치료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시간에) 딱 맞춰 가야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중략) 무조건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다쳤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아직 제 주변에서는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참가자2)

“기름값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특히 지금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죠. 제가 그 아이 집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치료실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기름 값이 얼마 들었다고 부모님들에게 요청을 못하겠더라고요.” (참가자2)

- 활동지원서비스 중 이동지원 제공 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인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예약도 어렵고 예약시간에 정확히 맞춰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지원을 하고 있다.
- 활동지원사가 이동지원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 시 사고위험에 대한 부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보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주유비 및 관리비 등이 대부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활동지원사 부담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활동지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보수교육을 1년에 8시간 받아요. 우리 선생님(활동지원사)이 하는 말은 이쪽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저쪽 기관에서 돌려막기로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죠. 장애인, 아동 케어 서비스, 심리, 응급처치, 우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하기는 하는데 거의 비슷하겠죠.”

(참가자 1)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 역량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제공방법, 제공기준 및 절차의 이해, 응급처치 요령,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재난대응 교육의 내용으로 연 2회 이상,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지원사들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무교육은 매년 유사한 주제와 강사로 진행되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고,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부딪히고 있다. 이에 보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점 및 요구사항

“저는 쉬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4시간하고 쉬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 30분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도 우리가 일을 해요. 아이들만 두고 설 수 없잖아요. (중략) 쉬는 시간 30분은 우리가 수당을 못 받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참가자 2)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30~1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활동지원사가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에는 대부분 보호자 없이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사만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혼자 두고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발달장애인을 방임하는 상황이 발생되며 사고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기가 어렵다.
- 또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활동비 추가지원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아이만 케어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아이만 케어하지 않아요. 부모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중략) 나한테는 부모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중략) 부모하고 맞지 않으면 부딪히고 힘들어요. 부모가 요구하는 사항도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힘든 거 같아요. (질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부정수급은 안되고, 선생님에게 이러면 안되요라고 하는데 그게 끝이에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는데 참여를 안해요. (중략) 부모들에게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에 대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꼭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가자 2)

-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시, 보호자들과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무례한 요구를 들고 있다. 제공기관에서 보호자들에게 계약당시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무례한 요구로 인한 부모들과의 문제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현행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2.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부모 및 보호자 양적조사(설문지) 주요 결과

□ 일반적 상황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25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자녀의 연령대는 성인(만 19세 이상) 17명(68.0%), 아동·청소년 8명(32.0%), 성별은 여성 11명(44.0%), 남성 14명(56.0%)으로 나타났다.

<표 58> 활동지원서비스 설문 응답자 자녀의 연령대 및 성별분포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연령대	성인 (만 19세 이상)	17	68.0	성별	여	11	44.0
	아동·청소년 (만 18세 이하)	8	2.0		남	14	56.0
	전체	25	100.0		전체	25	100.0

-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유형으로 지적장애와 신체(뇌성마비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5명(20.0%),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갖는 경우 11명(44.0%), 지적장애만 갖고 있는 경우 9명(36%)로 나타났다.

<표 59>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유형 구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지적 + 신체(뇌성마비 등)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음	5	20.0
지적 + 자폐성장애도 갖고 있음	11	44.0
지적장애만 있음	9	36.0
전체	25	100.0

-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정도로 가끔 도전적 행동이나 자폐증상을 보이는 경우 7명(28.0%), 도전적 행동 등이 없는 경우 10명(40.0%), 도전적 행동이나 자폐증상이 심한 경우 8명(32%)로 나타났다.

<표 60>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정도 구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가끔 도전적 행동이나 자폐증상을 보임	7	28.0
도전적 행동 등이 없음	10	40.0
도전적 행동이나 자폐증상이 심함	8	32.0
전체	25	100.0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기간으로는 응답자 평균 63.48개월(5년 3개월)로 나타났으며, 최소 7개월에서 최대 168개월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 6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기간

(단위: 명, 시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25	7	168	63.48

□ 서비스 접근 및 계획수립(의견반영)

-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는 과정도 쉬웠고, 내용도 충분했던 경우가 15명(6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정보를 얻는 과정은 쉬웠지만, 내용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가 7명(28.0%), 정보를 얻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내용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경우가 2명(8.0%), 정보를 얻는 과정이 어려웠고, 내용도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가 1명(4.0%)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활동지원서비스 정보의 접근성 및 내용의 충분성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정보를 얻는 과정도 쉬웠고, 내용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15	60.0
정보를 얻는 과정도 어려웠고, 내용도 충분하지 않았다.	1	4.0
정보를 얻는 과정이 쉬웠지만, 내용은 충분하지 않았다.	7	28.0
정보를 얻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내용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2	8.0
전체	25	100.0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기관과 제공계획 수립 및 이용계약을 체결 시 자녀(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10명(40.0%), 의견 일부 반영하는 경우 7명(28.0%), 의견 전부 반영하는 경우 8명(32%)으로 나타났다.

<표 63> 활동지원 제공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의견반영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의견 반영하지 않음	10	40.0
의견 일부 반영	7	28.0
의견 전부 반영	8	32.0
전체	25	100.0

□ 서비스지원(즉시 연결, 전문성, 제공량)

-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 시 즉시 연결되는지에 대해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결된다 18명(72.0%), 서비스 연결이 지연된다 5명(20.0%), 잘 모르겠다 2명(8.0%)으로 나타났다.

<표 64> 활동지원서비스 연결성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예(서비스 연결 신속)	18	72.0
아니오(서비스 연결 지연)	5	20.0
잘 모름	2	8.0
전체	25	100.0

- 현재 활동지원 인력의 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19명(76.0%),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와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각 3명(12.0%)으로 나타났다.

<표 65> 활동지원 인력의 전문성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예(전문성 갖추)	19	76.0
아니오(전문성 미흡)	3	12.0
잘 모름	3	12.0
전체	25	100.0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이 충분하지에 대해, 현재 제공되는 시간이 적당하다는 경우 12명(48.0%), 부족하다는 경우가 11명(44.0%), 충분하다는 경우 2명(8.0%)으로 나타났다.

<표 66> 활동지원 제공시간의 충분성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부족하다	11	44.0
적당하다	12	48.0
충분하다	2	8.0
전체	25	100.0

□ 인권침해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발달장애인 자녀가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21명(84.0%)이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경우가 1명(4.0%), 잘 모르겠다가 3명(12.0%)로 나타났다.
- 특히 인권침해를 경험 시 사례를 기록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으나, 실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사례를 기록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사유에서 발달장애인 자녀가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 모니터링 및 만족도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하고 있는 경우 22명(88.0%), 하지 않는다는 경우 2명(8.0%), 잘 모르겠다는 경우 1명(4.0%)으로 나타났다.

<표 67>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실행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예(모니터링 함)	22	88.0
아니오(모니터링 하지 않음)	2	8.0
잘 모름	1	4.0
전체	25	100.0

- 현재 제공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4점 척도를 사용한 결과, 만족한다 21명(84.0%), 매우 만족한다 4명(16.0%), 만족하지 못한다 및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각 0명(0.0%)으로 나타났다.

<표 68>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만족한다.	2	8.0
만족한다.	22	88.0
불만족 한다.	0	0.0
매우 불만족 한다.	0	0.0
전체	25	100.0

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서비스

1. 공공후견인 인터뷰 결과

□ 공공후견제도 진행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법원에서 판사들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으로 청구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깐 믿고는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편입니다. 다만, 법원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수하기 전의 과정이 오래 걸리죠. 우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진행으로 대기 인원이 많고요. 인력을 많이 뽑아서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기인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공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공공후견인)

-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심판청구가 완료되고 후견활동이 최대한 빨리 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후견심판청구 신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후견심판청구를 위해서는 공공후견 신청에 따른 상담, 사회조사서 작성, 증빙서류 준비, 후견인 선임, 심판청구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런데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지역별 지원센터의 실무인력의 부족으로 발달장애인의 후견신청을 하면 후견심판청구 신청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즉, 공공후견사업 예산한계로 공공후견심판청구를 준비할 실무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심판청구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예산 증액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신속하게 심판청구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매칭 어려움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후견인을 매칭 해줘야 하는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받은 분들은 많은데, 막상 직접 의뢰가 들어오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칭이 길어지면서 후견인 결정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중략)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받고 나면, 실제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든요. 힘들다고 그러면 막상 의뢰가 오면 (중략)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 못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후견인)

- 발달장애인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제3자가 발달장애인과 후견인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후견인을 찾기도 어렵지만, 공공후견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많은 활동량) 또는 적은 활동비로 후견인 연결이 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활동비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후견활동에 따른 활동비의 적절성

“개인적인 실비적인 부분은 보완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섬에 들어가야 하는데, 뺏았을 자기가 다 지불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15만원으로 하되, 그 이상은 증빙을 하면 적어도 실비 정도는 보상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략) 또 지역으로 갈수록 후견인 구하기 힘들습니다. 법인후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후견 제도를 하려면 소속된 직원이 하게 되는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힘들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후견인)

- 공공후견활동으로 인한 활동비를 매달 지급(건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공공후견인들은 실제 활동함에 있어서 후견활동 뿐만 아니라, 피후견인과의 친밀감 형성 및 욕구과약 등을 위해 대면 또는 비대면 만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업무의 강도에 비해 활동비가 적다는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후견활동에 따른 활동비의 인상 또는 비용발생에 따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 후견활동에 따른 요구 및 개선사항

“후견을 몇 건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후견활동의 내용도 들여다 봐야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조차 올해 몇 건을 했고, 내년에는 몇 건을 할 것이냐고 합니다.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거든요. 물론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량을) 검토해야 하니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딱 숫자만 보잖아요.”

(공공후견인)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제도를 평가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연결 실적이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연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후견의 활동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2. 공공후견인 양적조사 주요 결과

□ 일반적 사항

- 발달장애인 후견활동을 위해 후견인의 전문자격 소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38명(8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행정사 및 요양보호사 각 1명(2.3%), 기타(행정사 등) 3명(7.0%)으로 나타났다.

〈표 69〉 공공후견인 전문자격 취득 유형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사회복지사	38	88.4
행정사	1	2.3
요양보호사	1	2.3
기타(행정사 등)	3	7.0
전체	43	100.0

-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업무 내용으로는 재산관리가 36명(21.8%)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업무 32명(19.4%), 의료관련 업무 30명(18.2%), 주거 및 시설 입소 업무 25명(15.2%), 문화여가관련 업무 20명(12.1%), 취업관련업무 12명(7.3%), 교육관련 업무 9명(5.5%), 기타(휴대폰 구입 및 관리)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후견인 1인당 평균 3.8개의 후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0〉 공공후견업무의 내용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재산관리 업무	36	21.8
은행업무	32	19.4
주거 및 시설 입소 업무	25	15.2
의료관련 업무	30	18.2
취업관련 업무	12	7.3
교육관련 업무	9	5.5
문화여가관련 업무	20	12.1
기타(휴대폰 구입 및 관리)	1	0.6
전체	165	100.0

- 공공후견인의 후견활동 기간은 평균 37.3개월이며, 2년 이상 ~ 3년 이하가 18명(41.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 5년 이하 12명(27.9%), 5년 이상 7명(16.3%), 1년 이하 6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 공공후견활동 기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평균
1년이하(~12개월)	6	14.0	37.3개월 (3년 1개월)
2년이상 ~ 3년이하(13~36개월)	18	41.9	
3년이상 ~ 5년이하(37~60개월)	12	27.9	
5년이상(61개월~)	7	16.3	
전체	43	100.0	

□ 후견교육 및 피후견인 선정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실제 후견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긍정적 응답은 93.1%로 매우 높게 났으며, 매우 도움이 되었다 10명(23.3%), 도움이 되었다 30명(69.8%)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응답 7.0%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명(4.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명(2.3%)으로 나타났다.

<표 72>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도움정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도움이 되었다.	10	23.3
도움이 되었다.	30	69.8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4.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2.3
전체	43	100.0

- 법원에서 피후견인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 어려웠던 점이 있다는 응답이 81.4%로 매우 높았고, 어려웠던 점이 없다는 응답은 18.6%로 낮게 나타났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응답자 중 후견인 등록절차가 복잡했다가 19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후견심판 청구에 앞서 시군구 담당자와 피후견인을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가 11명(20.8%), 후견심판

청구에 앞서 피후견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 및 법원이 정한 후견의 사무와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가 각 8명(15.1%), 후견 활동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데 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없었다가 6명(11.3%), 기타 1명(1.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재청구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피후견인의 중대 사항일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표 73> 피후견인 선정되기까지의 어려웠던 점 또는 보완할 점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어려웠던 점 또는 보완할 점이 없다.	8	13.1
후견심판 청구에 앞서 피후견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	8	15.1
후견심판 청구에 앞서 시군구 담당자와 피후견인을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11	20.8
후견 활동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데 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없었다.	6	11.3
법원이 정한 후견의 사무와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8	15.1
후견인 등록절차가 복잡했다.	19	35.8
기타	1	1.9
전체	53	100.0

-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이 선정되기까지 발달장애인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느냐에 대해, 일부 반영되었다가 20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반영되었다가 17명(39.5%).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가 1명(2.3%),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가 5명(11.6%)으로 나타났다.

<표 74>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이 선정되기까지 발달장애인의 의사 반영정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대부분 반영되었다.	17	39.5
일부 반영되었다.	20	46.5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1	2.3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5	11.6
전체	43	100.0

□ 공공후견업무 활동(활동량, 의사소통, 의사존중)

- 후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량으로 월평균 실제 후견업무 수행 횟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3~4회가 16명(37.2%)으로 가장 높으며, 월평균 1~2회가 14명(32.6%), 월평균 5~6회 5명(14.0%), 월평균 7~8회 4명(9.3%), 월평균 9회 이상 3명(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5> 월평균 공공후견업무 횟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월평균 1~2회	14	32.6
월평균 3~4회	16	37.2
월평균 5~6회	6	14.0
월평균 7~8회	4	9.3
월평균 9회 이상	3	7.0
전체	43	100.0

- 공공후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량으로, 한 달 평균 피후견인과의 만남 횟수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확인한 결과, 대면 만남의 경우 월평균 3.88회, 비대면 만남의 경우 월평균 3.48회로 나타났다.

<표 76> 월평균 피후견인과의 만남 횟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평균(회)
만남	대면	40
	비대면	29
		3.88
		3.48

- 공공후견인이 후견활동을 하면서 피후견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수월한지에 대해, 의사소통이 수월하다가 24명(55.8%)인 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가 19명(44.2%)으로 나타났다.

<표 77>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의사소통 수월	24	55.8
의사소통 어려움	19	44.2
전체	43	100.0

- 공공후견인이 후견활동을 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지에 대해, 매우 존중 한다가 36명(83.7%), 조금 존중한다가 7명(16.3%)으로 나타났으며,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표 78〉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정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존중한다.	36	83.7
조금 존중한다.	7	16.3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	0	0.0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0	0.0
전체	43	100.0

-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피후견인의 이야기를 경청함이 28명(30.2%)으로 가장 높았고, 피후견인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논의함이 13명(30.2%), 기타 2명(4.6%)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 언어적 표현이 어려워 얼굴 표정과 행동 반응, 감정을 살피고, 시설 거주자의 경우는 생활지도 선생님의 의견을 참고한다고 하였으며, 의사소통 도구(그림 및 영상자료 등)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함(그림 및 영상자료 등)	0	0.0
피후견인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논의함	13	30.2
피후견인의 이야기를 경청함	28	65.1
기타	2	4.6
전체	43	100.0

□ 공공후견활동의 관리감독 및 지원체계

- 공공후견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86.0%로 매우 높았으며, 긍정적 응답 중 매우 적절하다 8명(18.6%), 적절하다 29명(67.4%)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응답비율 14%로, 부정적 응답 중 적절하지 않다가 6명(14.0%),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없는(0%)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후견활동의 관리감독 과정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적절하다.	8	18.6
적절하다.	29	67.4
적절하지 않다.	6	14.0
매우 적절하지 않다.	0	0.0
전체	43	100.0

- 후견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옹호나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14명(32.6%), 필요하다 18명(41.9%)로 옹호나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느낀 응답자의 비율이 74.5%(32명)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적절하다는 10명(23.3%), 필요가 없다 1명(2.3%)으로 나타났다.

<표 81> 옹호나 지원체계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14	32.6
필요하다.	18	41.9
현재 적절하다.	10	23.3
필요가 없다.	1	2.3
전체	43	100.0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 공공후견활동으로 피후견인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되는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명(44.2%), 영향을 미쳤다 22명(51.2%)으로 피후견인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95.4%(41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2명(4.7%)으로 나타났다.

<표 82> 공공후견활동이 피후견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	44.2
영향을 미쳤다.	22	51.2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4.7
전체	43	100.0

- 공공후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량으로, 한 달 평균 피후견인과의 만남 횟수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확인한 결과, 대면 만남의 경우 월평균 3.88회, 비대면 만남의 경우 월평균 3.48회로 나타났다.
-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인식을 후견활동 전과 후로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7명(16.3%),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29명(67.4%), 변화가 없다가 4명(9.3%), 부정적으로 변했다가 2명(4.7%),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가 1명(2.3%)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긍정적인 비율이 83.7%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부정적으로 바뀐 비율도 7.0%가 존재한다.

<표 83> 공공후견활동으로 발달장애인(피후견인)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7	16.3
긍정적으로 변했다.	29	67.4
변화가 없다.	4	9.3
부정적으로 변했다.	2	4.7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1	2.3
전체	43	100.0

□ 공공후견인 활동비

- 공공후견활동을 통해 받는 활동비의 적절성에 대해, 현재 활동비가 적절하다 15명(34.9%) 보다 부족하다가 28명(65.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비가 많다는 의견은 없었다.

<표 84> 공공후견인 활동비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많다	0	0.0
적절하다	15	34.9
부족하다	28	65.1
전체	43	100.0

- 공공후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량으로, 한 달 평균 피후견인과의 만남 횟수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확인한 결과, 대면 만남의 경우 월평균 3.88회, 비대면 만남의 경우 월평균 3.48회로 나타났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28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활동비(한달 기준)를 조사한 결과, 20만 원이 11명(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만 원이 10명(35.7%), 50만 원 이상이 4명(14.3%), 25만 원 3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희망 활동비로는 33.7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85> 희망하는 공공후견인 활동비(한달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평균(만원)
20만원	11	39.3	33.75
25만원	3	10.7	
30만원	10	35.7	
50만원 이상	4	14.3	
전체	28	100.0	

1. 주거서비스 FGI 인터뷰 내용 결과

1) 그룹홈 인터뷰 결과

□ 그룹홈에서의 생활만족도

- 그룹홈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과거 열악한 시설에서 살았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룹홈에서의 생활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장애가 있는 (참가자 3)은 그룹홈은 활동지원사가 일과 후 퇴근을 하기 때문에 밤에도 지원인력이 있는 단기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있던 곳에서는 바퀴벌레, 곰팡이가 있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아요”

(참가자 1)

“시설에 있는 기간 만료로 인해 ○○시설로 왔는데 이곳이 좋다.”

(참가자 2)

“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 혼자 자립하는 것이 힘들어서 (중략)” ..

(참가자 3)

□ 그룹홈에서의 생활지원

- 그룹홈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의 대부분 영역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사는 청소에서부터 음식, 외출, 출근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준비해주고요..(중략).. 저녁에 청소도 해줘요..반찬도 해줘요..시장은 잘 못 봐요.. 다 같이 가서 장봐요(중략)” ..

(참가자 2)

“활동지원 받고 있어요..레슨갈 때, 성당갈 때, 산책갈 때..(중략). 직장갈 때 도와줘요.

(중략)..복지관 갈 때..이동지원요..(중략) 활동지원 210시간 지원받고 있어요..삼푸 사거나, 로션 살 때 같이 가거나. 옷 살 때 같이 가거나 (중략)” ..

(참가자 3)

□ 주거지 선택 여부

- 인터뷰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무연고이거나 가족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에 오게 된 경위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주변인에 의해서 오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여기가 깨끗해서 원장님이 면접 볼 때 여기에 오고 싶다고 했어요,, 이 방에서 면접했었어요(중략).. ..(중략)여기오면 안싸우고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

(참가자 1)

“저번에 있던 원장님이 컴퓨터로 여기 알아서 여기로 왔어요(중략)..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했는데 좋아요” ..

(참가자 2)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만족도 여부

- 참가자들은 그룹홈 주거 환경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주거공간을 제시 하였다.

“네. 좋아요...곰팡이가 없어서요(중략).. 집을 깨끗하게.. 분홍색 좋아해요 (중략).. 벽을 분홍색으로 할 거예요(중략)..강아지도 기르고 싶어요” ..

(참가자 1)

“네, 그냥 좋아요.”

(참가자 2)

□ 함께 사용하는 방의 인원 여부

- 참가자들 대다수는 방을 혼자서 사용하지 않았으나 혼자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룹홈에 오기 전에 살던 거주시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살았는데 현재는 인원이 줄어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이요” ..

(참가자 1)

“주중엔 3명인데..(중략).. 먼저 있던 곳에서는 3명이 한 방에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 2명이 한 방에 있다가 1명이 퇴소해서 혼자 있게 되니 잠자는 사람은 혼자예요.. 혼자서 사용해요(중략)더 좋아요(중략)” ..

(참가자 3)

“그럼요..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중략).. 지금은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요” .. (참가자 1)

“지금 혼자 쓰고 있어요..그래서 좋아요” .. (참가자 2)

□ 그룹홈이 아닌 독립 주거 욕구

- 독립된 주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대다수는 독립된 주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가자 3)은 시각장애가 있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혼자 있으면 편하고 좋지요..(중략) 내 자유를 갖고 싶어요.. 혼자서 (중략)” ..

(참가자 1)

“아니요..(중략) 혼자 사는 게 불편해요..(중략) 생각을 안했어요” ..

(참가자 3)

- 참가자들은 원하는 주택유형에 대하여 모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요(중략)” ...넓은 게 좋아서요(중략).. 아파트는 넓잖아요(중략)” ..

(참가자 1)

- 참가자들은 독립된 주거에서 살아갈 경우 불편한 점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시각장애가 있는 (참가자3)은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자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아니요” ..

“무거운 짐을 혼자서 못하니까..냉장고 소파 이런 거 혼자서 못하니까.. (중략)” ..

(참가자 2)

“아니요..(중략)복지콜이 불편해요..(중략)배차가 안될 때는 40분을 기다리고요..(중략)..복지콜이 안 잡힐 때 불편해요” ..

(참가자 3)

□ 소결

- 인터뷰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무연고이거나 가족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만족도는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면에서는 온돌바닥 보다는 침대를 선호하였으며 그룹홈을 나와서 독립된 주거를 원하는 질문에는 (참가자 3)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된 주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립주거 의지가 강한 (참가자 1)은 그룹홈에서 습득한 일상생활 기술을 독립했을 때 사용하겠다고 답하였고, (참가자 2)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참가자 3)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현재 거주하는 그룹홈이 작은 평형의 빌라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주거를 원치 않은 (참가자 3)은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으로 야간에도 활동지원사의 지원이 필요하며, 혼자 사용하는 방을 선호하였으나 독립주거는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이는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이 독립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2)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치 인터뷰 내용 결과

지원주택에서 근무하는 주거코치 경력

- 주거코치들은 2년에서 3년 경력의 소유자로 나타났다.

“2년입니다”

(주거코치 1)

“3년입니다”

(주거코치 2)

주거지 선택 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이미 마련된 주거지에 입주하기 때문에 거주지 선택부터 자기결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그리고 매니저 분들이 같이 방을 얻기 때문에(중략).. 그분들 데리고 가서 어떠냐 해서 그분들이 좋다(중략).. 그런 경우에 얻기 때문에 살고있는데 대해서 거의 대부분 만족하고 있어요 ”

“(중략)만약에 조금 이진 아니다 싶으면 이런 저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제 생각에 같이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가 결정하지요”..
(주거코치 2)

주택구조의 개선사항

- 참가자들은 주택구조의 개선점에 대하여 협소한 공간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화장실을 비롯하여 주택구조가 불편하다고 답변하였다.

.. “(중략)장애인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요(중략)” ..

.. “(중략)이동하는 게 불편하다..(중략)여기 있는 장애인이 발달장애와 지체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이라 휠체어를 사용하는데요..(중략)화장실 문 폭이 좁아서 들어갈 때 기어서 들어가요” ..

(주거코치 1)

□ 주거관리 유지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여정도

- 주거관리 유지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여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광등 교체, 선풍기 수납, 싱크대 수리 등은 주거코치나 주거 코디네이터가 지원을 하고, 공과금, 용돈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매니저 남자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중략)” ..

.. “(중략)공과금은 이제 거의 저기 자동 이체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중략)고지서가 있으면 매니저분한테 갖다 드리고 저는 돈 관리는 아니고 본인이 용돈을 찾는다든지 하면 같이 가주는 선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중략)” ..

(주거코치 2)

□ 발달장애인들의 주거만족도

- 발달장애인들은 지원주택에 대하여 좁은 평수로 불편함을 느꼈으나 화재감지기와 응급 알람이 등 안전장치가 있는 점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조금 좁아서 불편하다는 친구 외에는 다른 분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

“저 응급 알람이가 있고, 또 화재의 감지거나 이런 거 다 돼 있어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자동 잠금 장치가 돼 있고 해서(중략)” ..

(주거코치 2)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거코치들의 개입 정도

- 주거코치의 개입정도는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코치1)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코치 2)는 장애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일반적인 것을 도와 줘야 해요. 식사, 청소, 이동지원 다 필요하지요. 아무래도 중증이다 보니까(중략)..그리고 자기의사 표현 잘 안되고 그러니까요(중략)” ..

(주거코치 1)

.. “(중략)자기가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니까.. (중략)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중략)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다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략)좀 그래도 많이 좀 받은 도와줘야 된다고 봐야겠죠” .. (주거코치 2)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 향상

- 인터뷰에 참여한 주거코치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 입소하고 나서 예민했던 성격이 온화해졌으며 집에만 있으려 했던 장애인이 공원산책도 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고 답하였다.

.. “(중략)시설에 있다 오신 분들이라 여기 와서 일대일 서비스를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요.(중략)표정도 어둡고, 의사표현도 없었는데 지금은 좋고 나쁘고를 표현해요(중략)” .. (주거코치 1)

“(중략)다른 데 있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오신 분이 계세요..(중략)우울증도 좀 있고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많이 얘기를 하니깐 이제 본인도 자기는 긍정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도 노력을 하려고 그런다 하고(중략).. 이제 공원 산책도 하고 들어오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겠다고 하니깐(중략)” .. (주거코치 2)

□ 주거코치와 발달장애인과의 소통여부

- 이들의 관계는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러한 방법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찰보다도 넘치게 너무 많이 들어준다고 생각해요..(중략)장애인은 아기 처럼 보호해야 한다는(중략)..막 안아주시고 서비스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중략)” .. (주거코치 1)

“아니요. 마찰은 없었어요. 마찰은 없었고(중략)..제가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
 “한 번은 같이 시장을 갔는데(중략)..좀 제가 뭐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서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자주 이러니까 오히려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제가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 (주거코치 2)

□ 발달장애인 주거코치로서 힘든 점

- 주거코치들은 주로 야간 시간대 근무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사가 주간에 지원활동을 하고 퇴근하면 그 후 야간 시간대에 주거코치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 “(중략)주거코치는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나까요 힘들지요, 스트레스도 있지요(중략)” .. “야간에 주로 한다(중략)..6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중략)” .. “증증인 분들은 활동지원사가 계시고, 증증 아니신 분들은 활동지원사가 안 계시니까 저희가 일하지요” ..

(주거코치 1)

□ 소결

- 주거코치는 지원주택에서 활동지원사와 주거 코디네이터의 중간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 퇴근 후에 야간에 주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지원주택은 장애인거주시설 보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주택은 공급형과 비공급형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공급형은 이미 배정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형식이라 선택권이 없다. 반면에 비공급형은 장애인이 스스로 전세나 매입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주거코치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코치는 이 외에도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주택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화장실 문이 협소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어서 들어가는 등 매우 불편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디네이터 인터뷰 결과

□ 주거코디네이터 경력은 주로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입니다. 2020년 7월에 입사했습니다”.

(주거 코디네이터 1)

“저도 2년입니다. 2020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주거 코디네이터 2)

□ 주거지 선택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 반영 여부

- 공급형 주택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거지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고 비공급형 주택은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재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지역은 공고신청 해서(중략).. 호실 선정은 별도로 어렵다..(중략).. sh에서 선정된 분이 읍니다..(중략)거주시설, 자립생활시설 담당자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 준다” ..

(주거 코디네이터 1)

□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

- 장애인이 소음과 쓰레기 청소 등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있으나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났다.

.. “(중략)마주할 기회가 없어서 마찰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명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독립 생활하면서 이웃과 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중략)” ...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게..(중략)피해 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금전 학대라든가 사기 피해 같은 게 (중략)” ..

(주거 코디네이터 2)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

- 주거코치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자립 및 독립주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보고 있었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주택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상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중략)” ..

.. “(중략)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도 있고 근데 혼자 살기보다는 누구와 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외롭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있고(중략)” ..

(주거 코디네이터 1)

.. “(중략)근데 무조건 독립생활 자체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중략)막상 나오면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

.. “(중략)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옆에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 케이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독립생활만 이렇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원주택 같은 형태와 그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동시에 좀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거 코디네이터 2)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역량

-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하면서 표현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처음에는 사실 저희 대상자분들이 싫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셨거든요.. “(중략)이렇게 싫다라는 표현도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보다 이게 좋다고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중략)예전에는 이렇게 한 단어 정도만 답변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문장 단어들을 좀 더 표현을 해 주시고 (중략)” ..

.. “(중략)가장 지원할 때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은 돌아가도 대상자 분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대상자분들이 선택한 것들을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는지..(중략)아무래도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

(주거 코디네이터 1)

□ 발달장애인과 주거코치 간 의견대립 지원 방안

- 갈등이 나타날 때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당사자 중심에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그럴 때는 같이 상담을 해서 이게 대상자 건강에 위험을 끼치거나 대상자가 위험을 야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대상자의 의견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려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

(주거 코디네이터 1)

.. “(중략)예를 들어 음식물 같은 게..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중략)이거는 먹을 수 있다, 보관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 발달장애인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코치 선생님마다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사자가 제일 중심이 돼야 되고 당사자분들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따라서 먹을 수 있고 없고를 안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주거 코디네이터 2)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거코치와 활동지원사의 업무중복과 역할

- 주거코치와 활동지원사의 업무는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코치는 교육하고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다르고,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 외에 일상 생활 서비스를 더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코치를 투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 “(중략)이제 야간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 대상자분들의 위급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 보니 코치 선생님들과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간의 업무가 조금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 “(중략)그런데 그게 동시에 지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 “(중략)일정 부분이 겹치는 이유는 확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코치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활동지원 시간이 넉넉하다면 코치 선생님은 활동지원의 느낌보다는 어떤 정보를 같이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저희 독립 계획에 맞춰서 같이 뭔가 교육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같이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거 코디네이터 2)

□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에 대한 양가감정

- 주거 코디네이터들은 발달장애인은 독립주거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주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자립 패러다임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중략)그런 과정 안에서 대상자 혼자서 사실 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

(주거 코디네이터 1)

.. “(중략)당사자분들께서도 이런 욕구가 있긴 하세요..(중략)대부분 거주 시설에 살다 보니까 막상 나오면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

(주거 코디네이터 2)

□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 주거 코디네이터들은 발달장애인의 독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대상자분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라든지 같은 게 계속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

(주거 코디네이터 1)

.. “(중략)비공급형 분들은 흔히 말하는 좀 불안정한 주택에서 사시는 거잖아요..(중략)매일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언제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중략)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택을 먼저 확보하는 거(중략)” ..

.. “(중략)저희 ○○이랑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권역 지금 담당 이용인들이 있는데 이분들 한 70% 80%는 무연고로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책임을 저주거나 그런 분이 아예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옹호 영역에 있어서 당사자분과 꾸준히 상담하고 확인하는 게 먼저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 후견인 같은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

(주거 코디네이터 2)

□ 소결

- 인터뷰에서 주거 코디네이터는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지원주택과 관련한 모든 영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코디네이터 1)은 공급형주택을 지원하고 (주거 코디네이터 2)는 비공급형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공급형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비공급형은 당사자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주거 코디네이터는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애인이 독립을 원한다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립생활지원주택에 사는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주민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마찰은 없으나 간혹 만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코치와 발달장애인과 마찰에서는 최대한 장애인당사자 우선주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코치와 활동지원사의 업무중복과 역할 설정에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활동시간대가 다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을 하고, 주거코치는 지원주택 관리자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시간대가 다르게 형성되므로 업무에 갈등은 없는 것으로 답하였다.
- 주거 코디네이터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서비스, 경제적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주택 주거코디네이터 인터뷰

□ 주거 코디네이터 경력은 5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 “ 2017년 5월에 입사해서 5년 근무했습니다”..

(주거 코디네이터)

□ 주거지 선택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 보장 여부

- 주거지 선택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나 입주 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마음대로 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자립생활주택은 이미 마련된 주거지와 세팅된 환경을 보고나서 당사자분이 보고 주택(운영사업자)을 선택하는 구조”공간구조는 입주 하시고 나서 당사자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있다”.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

- 지역사회 반응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지역사회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있지는 않으나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음(중략)” ..

.. “(중략)비장애인처럼 이웃과 함께 인사하고 지내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하며 생활함(중략)” ..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자립 및 독립주거에 대한 의지

-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고 발달장애인은 자립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만나봤던 보호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걱정된다. 위협하다. 할 수 없다)을 많이(중략)” ..

.. “(중략)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처음 탈시설을 했을 때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중략)최근에는 지금 당장 아파트로 가고싶다..(중략)가구는 어떤 걸 살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역량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입소 전보다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자립생활주택도 공동생활이다보니, 나만의 집을 얻고 나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더욱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이 강화되었음” ..

.. “(중략)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반면 외로워하시는 경우도 있었다..(중략)그에 따라 퇴거자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일자리를 통해 낯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 “(중략)이전보다 동료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며, 같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함(이전에는 싫어함)..(중략)이전에는 절약하였는데, 돈을 사용하기 시작함” ..(동료나 자신을 위해)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의견대립 해결 방안

-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주거 코디네이터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개입함.. (중략)당사자분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경우나..(중략)적극적으로 당사자분을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입..(중략)당사자분이 요청해서 개입을 함” ..(해결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요청함)

.. “(중략)당사자분의 입장에서 활동지원사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개별지원 방법에 대해 제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중략)당사자분이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교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거 코디네이터와 활동지원사의 업무중복과 역할 설정

-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주거 코디네이터는 행정 업무와 외부자원연계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활동지원사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중략)장애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중략)” ..

.. “(중략)코디네이터는 행정업무와 전반적인 당사자를 위한 외부자원 연계에 중점을 둡니다(신탁, 의료, 외부활동)” ..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에 대한 양가감정

- 주거 코디네이터들은 장애인의 자립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자립은 당연한 부분이며, 할 수 있다고 생각함..(중략)경험하며 배워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충분히 독립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중략)” ..

.. “(중략)당연한 권리. 지원만 있으면 가능하다..(중략)지원이 부족하다” ..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의 주거관리 및 유지 참여 정도

- 주택의 단순 수리에는 장애인이 참여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들은 코디네이터나 활동 지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자립생활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공과금이나 비품수리 등은 코디가 전담해서 진행함..(중략)다만 단순수리의 경우에는 입주자와 함께 수리 하고자 노력함” ..(형광등 교체 등)

.. “(중략)퇴거자의 경우, 퇴거 초기에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지원하며, 주택 수리 등 입주자, 활동지원사와 함께 비품수리 진행하고 있음” ..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 주거 코디네이터들은 발달장애인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지원사의 시간확대 및 주거와 의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중략)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확대,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

(주거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 주거 코디네이터로서의 힘든 점

- 주거 코디네이터들은 발달장애인과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것과 24시간 대기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해 나가야하는 부분이 어려울 때가 있음..(중략)행정업무도 많은데 당사자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 ..

.. “(중략)공휴일이나 휴일이 없음..(중략)긴급으로 지원을 나가야하거나 주말에도 연락이 오는 상황이 많음” ..

(주거 코디네이터)

□ 소결

-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곳으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이다.
- 장애인은 입소 당시 이미 마련된 주거지에 입주하고 입주 후에는 당사자 마음대로 집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주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자들은 장애인의 독립주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나, 당사자인 발달장애인들은 자립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자립생활주택에서 독립주거로 이전한 후에는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워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이 독립주거를 하면서 혼자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기선택권과 결정권, 동료에 대한 애정, 지출 등에 대해 변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청을 해서 개입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교체를 원하는 경우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코디네이터와 활동지원사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주거 코디네이터는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주택관리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장애인의 독립주거에 대해서는 양가감정 보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하며 독립주거를 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 주거유지 관리에서는 단순한 일은 장애인과 협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비품 수리의 경우에는 주거 코디네이터가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지만 주거 코디네이터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모든 지원인력, 지원협력체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일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휴일도 없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인터뷰 내용결과

□ 이전 자립생활주택 생활환경에 대한 의견

- 자립생활주택을 퇴소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도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아무래도 혼자만의 공간이 있기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공동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면도 있긴 하죠” ..

(자립생활센터 퇴소자)

□ 이전 자립생활주택과 현재 생활의 차이점

- 자립생활주택 퇴소자는 두세 명이 함께 살았던 자립생활주택에서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점을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그래도 주택 쪽 두세 명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해 졌어요. 주택에 있을 때(중략)” ..

.. “(중략)보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중략)나는 감추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중략)” ..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 현재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 인터뷰 참가자는 카페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저는 커피를 좀 잘 즐기는 편이라 카페나 뭐 이런 데가 있어서” ..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에 산다는 것의 의미

- 자립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독립된 주거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생활이라면 행복한 거 자유로운 거” ..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점

-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이동 보조 이런 거도 지금 다 받고는 있긴 하지만..(중략)시간이 좀 외부에 특히 특박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긴 하지만..(중략)약간 지금 모자라서(중략)” ..

(자립생활센터 퇴소자)

□ 소결

-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곳이다. 입소기간은 최대 7년이며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이다.
-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은 7년 동안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지 3년이 지났다. 처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으로 입소하였을 때, 여러 명이 사용했던 거주시설보다 너무 좋았으며 처음 자립생활주택에 와서 느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답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립생활주택도 공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주거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하였다. 다만, 활동지원사의 지원 시간이 부족하여 외출 시 이동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6) 자립생활주택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인터뷰 결과

□ 자립생활주택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인터뷰 참가자는 자립생활주택의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방이 있는 점과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 주는 것, 주거 코디네이터가 잘 대해 주는 것 등 모든 면에서 자립생활주택에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내방 좋아요..(중략)거실바닥이 좋아요 시원해서 좋아요” ..

.. “(중략)활동지원사랑 놀러나가서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있어요” ..

.. “(중략)코디가 잘 지원해 주는 거 같음..(중략)다음에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음” ..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 자신의 집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후에는 아파트에 살기를 원했고 친한 동료와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유성이네처럼 아파트였으면 좋겠어요, 넓어서 좋아요(중략)” ..

.. “(중략)옆집에 유성이(동료서포터)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 주거 독립 시 우려사항

-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후에는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혼자 살고 싶어요 무서운 거 없어요” ..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 자신의 집에 산다는 것의 의미

- 인터뷰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독립된 주거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즐거울 것 같아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중략)더 신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중략)못하는 건 지원사님에게 말하면 되요” ..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기 위해 정부에 요구할 점

-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을 위해 일자리와 여가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놀러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중략)일자리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 소결

- 인터뷰 참가자는 51세 발달장애여성으로, 자립생활주택에 오기 전에는 거주시설에서 살았었는데 당시에는 너무 열악한 삶을 살았으나 현재는 자신의 방이 있고 활동지원사 및 주거 코디네이터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니까 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립생활주택을 퇴소하면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했고 친한 활동지원사와, 친한 친구랑 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가자는 자립생활주택을 퇴소하고 혼자만의 독립된 거주지에 살게 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으며 자립생활주택도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기상시간, 취침시간, 식사 시간 등 단체 행동에 자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정부에 바라는 것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접근이나 이동에 제한이 없는 것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부모 및 보호자 양적 설문지 조사 주요 결과

- 설문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는 총 34명으로 총 7문항에 대해 답을 하였다. 여성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는 38.2%(13명), 남성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는 61.8%(21명)이다.

<표 86> 주거서비스 장애인 성별

(단위: 명, %)

분류	사례수	%
여성	13	38.2
남성	21	61.8
전체	34	100.0

□ 거주중인 주택유형

- 부모 및 부모랑 같이 거주가 각각 2.9%(1명), 자가가 85.3%(29명), 지원주택이 8.8%(3명)로 나타났다.

<표 87>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유형

(단위: 명, %)

	사례수	%
부모랑 같이 거주	1	2.9
부모집	1	2.9
자가	29	85.3
지원주택	3	8.8
전체	34	100.0

□ 주거환경 만족도

- 성인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경우,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가 76.9%(20명), 여성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인 경우 92.3%(12명), 남성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인 경우가 61.9%(13명)로 나타났다.

<표 88> 발달장애인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명, %)

유형		주거환경만족도			전체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연령	성인(19세 이상)	4(15.5)	20(76.9)	2(7.7)	26(100)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3(37.5)	5(62.5)	0(0)	8(100)
성별	여성	1(7.7)	12(92.3)	0(0)	13(100)
	남성	6(28.6)	13(61.9)	2(9.5)	21(100)
장애 유형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	-	4(80.0)	1(20.0)	5(100)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7(41.2)	10(58.8)	-	17(100)
	지적장애	-	11(91.7)	1(8.3)	12(100)

□ 필요한 주거서비스

- 여성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경우, 주거비지원 25.0%(5명) > 일상생활지원·주택내부 시설개선이 각 23.1%(3명) > 주택관리·주택외부 시설개선이 각 7.7%(1명)로 나타났으며, 남성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경우는, 일상생활지원 33.3%(7명) > 주거비지원 28.6%(6명) > 주택관리서비스 23.8%(5명) > 주택내부시설개선 14.3%(3명) > 주택외부 시설개선 0%(0명)으로 나타났다.

<표 89>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주거서비스

(단위: 명, %)

유형		필요한 주거서비스					전체
		일상생활지원	주거비지원	주택관리서비스	주택내부서비스	주택외부서비스	
연령	성인(19세 이상)	8(30.8)	9(34.6)	4(15.4)	4(15.4)	1(3.8)	26(100)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2(25.0)	2(25.0)	2(25.0)	2(25.0)	0(0)	8(100)
성별	여성	3(23.1)	5(25.0)	1(7.7)	3(23.1)	1(7.7)	13(100)
	남성	7(33.3)	6(28.6)	5(23.8)	3(14.3)	0(0)	21(100)

장애 유형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	3(60.0)	1(20.0)	0(0)	1(20.0)	0(0)	5(100)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5(29.4)	6(35.3)	3(17.6)	3(17.6)	0(0)	17(100)
	지적장애	2(30.0)	4(33.3)	3(25.0)	2(16.7)	1(8.3)	12(100)

□ 자녀의 자립희망여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의 자립에 대해, 자립 희망 50%(4명) > 잘모름 37.5%(3명) > 아니오 12.5%(1명)이며, 성인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경우 자립희망에서, 아니오 46.2%(12명) > 예 34.6%(9명) > 잘모름 19.2%(5명)를 나타냈다.
-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경우 자립희망과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같은 30.8%(4명), 잘모름이 38.5%(5명)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도 같은 결과로 자립희망과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42.9%(9명)로, 잘모름이 14.3%(3명)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인 경우,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80.0%(4명), 잘모름이 20.0%(1명)로 나타났으며, 지적+자폐 중복장애인 경우 부모가 자녀의 자립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자립희망이 아닌 경우 47.1%(8명) > 자립희망 41.2%(7명) > 잘모름 11.8%(2명)로 나타났다. 즉,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는 지적+자폐 중복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에 비해 자녀의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지적장애만 있는 경우는, 자립희망 예 50.0%(6명) > 잘모름 41.7%(5명) > 아니오 8.3%(1명)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지적장애만 있는 경우, 자녀의 자립희망이 50%(6명) > 지적+자폐성 중복장애가 41.2%(7명) >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는 0%(0명)으로 나타났다.

<표 90>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희망 여부

(단위: 명, %)

	유형	자녀의 자립희망 여부			전체
		예	아니오	잘모름	
연령	성인(19세 이상)	9(34.6)	12(46.2)	5(19.2)	26(100)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4(50.0)	1(12.5)	3(37.5)	8(100)
성별	여성	4(30.8)	4(30.8)	5(38.5)	13(100)
	남성	9(42.9)	9(42.9)	3(14.3)	21(100)

장애 유형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	0(0)	4(80.0)	1(20.0)	5(100)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7(41.2)	8(47.1)	2(11.8)	17(100)
	지적장애	6(50.0)	1(8.3)	5(41.7)	12(100)

□ 자녀가 자립할 경우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가 자립할 경우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 성인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혹은 친한 친구 2~3명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53.8%(14명) > 다른사람(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살았으면 하는 경우 38.5%(10명) > 부모 3.8%(1명) > 모름 3.8%(1명)로 나타났다.
- 장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는, 다른 사람(활동지원인)의 도움으로 살았으면 하는 경우가 100%(8명)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가 어린 관계로 자립할 경우 일상생활을 지원할 활동 지원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장애인이 여성인 경우 다른 사람(활동지원인)의 도움으로 살았으면 하는 경우가 69.2%(9명) > 사회복지사 혹은 친한 친구 2~3명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23.1%(3명) > 모름이 7.7%(1명)였다.
- 장애인이 남성인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자립형태는, 사회복지사 혹은 친한 친구 2~3명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52.4%(11명) > 다른 사람(활동지원인)의 도움으로 살았으면 하는 경우가 42.9%(9명) > 부모가 4.8%(1명)로 나타났다.
- 특히 자녀가 지적+신체(뇌성마비)인 경우, 다른 사람(활동지원인)의 도움으로 살았으면 하는 경우가 60.0%(3명) > 사회복지사 혹은 친한 친구 2~3명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20.0%(1명) > 잘모름 20.0%(1명)로 나타났다.
- 지적+자폐 중복인 경우는, 사회복지사 혹은 친한 친구 2~3명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52.9%(9명) > 다른 사람(활동지원인)의 도움으로 살았으면 하는 경우가 41.2%(7명) > 부모 5.9%(1명)로 나타났다.
- 지적장애만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활동지원인)의 도움으로 살았으면 하는 경우가 66.7%(8명) > 사회복지사 혹은 친한 친구 2~3명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33.3%(4명)로 나타났다.

- 장애인이 여성이고, 장애유형이 지적+신체(뇌성마비), 지적장애, 장애연령이 아동·청소년인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19세 이상)인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26명 중 1명(3.8%)만이 자녀와 살기를 원했다.

<표 91>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시 원하는 동거인

(단위: 명, %)

유형		자립 시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전체
		부모	다른사람 (활동지원인 등)	사회복지사 등 (친한사람 2~3인)	모름	
연령	성인(19세 이상)	1(3.8)	10(38.5)	14(53.8)	1(3.8)	26(100)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0(0)	8(100)	0(0)	0(0)	8(100)
성별	여성	0(0)	9(69.2)	3(23.1)	1(7.7)	13(100)
	남성	1(4.8)	9(42.9)	11(52.4)	0(0)	21(100)
장애유형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	0(0)	3(60.0)	1(20.0)	1(20.0)	5(100)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1(5.9)	7(41.2)	9(52.9)	0(0)	17(100)
	지적장애	0(0)	8(66.7)	4(33.3)	0(0)	12(100)

□ 자립 시 원하는 주택유형

- 장애인이 성인(19세 이상)인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자립 시 주택유형은, 아파트 57.7%(15명) > 단독주택 34.6%(9명) > 빌라 7.7%(2명)의 순이고, 장애인 자녀가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파트 62.5%(5명) > 단독주택 37.5%(3명)로 어느 경우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여성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인 경우, 자녀 자립 시 주택 유형은 아파트 76.9%(10명) > 단독주택 23.1%(3명)이고, 자녀가 장애인 남성인 경우, 아파트 47.6%(10명) > 단독주택 42.9%(9명) > 빌라 9.5%(2명)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선호하는 주택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
 - 특히, 장애유형에서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인 경우, 아파트 선호가 100%(5명)로 나타났으며, 지적+자폐성 중복인 경우 단독주택 58.8%(10명) > 아파트 35.3%(6명) > 빌라 5.9%(1명)로 나타났다.
- 지적장애만 있는 경우, 아파트 75.0%(9명) > 단독주택 16.7%(2명) > 빌라 8.3%(1명)로 나타났다.

<표 92>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시 희망하는 주택유형

(단위: 명, %)

유형		자녀의 자립 시 희망하는 주택유형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령	성인(19세 이상)	15(57.7)	9(34.6)	2(7.7)	26(100)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5(62.5)	3(37.5)	0(0)	8(100)
성별	여성	10(76.9)	3(23.1)	0(0)	13(100)
	남성	10(47.6)	9(42.9)	2(9.5)	21(100)
장애유형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	5(100)	0(0)	0(0)	5(100)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6(35.3)	10(58.8)	1(5.9)	17(100)
	지적장애	9(75.0)	2(16.7)	1(8.3)	12(100)

□ 자립 시 우선적으로 원하는 주거서비스

- 장애인이 성년인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자립 시 주거서비스는, 주거(주택)지원 46.2%(12명) > 활동지원서비스 30.8%(8명) > 생활비지원과 주거관리서비스가 각 11.5%(3명)로 나타났다.
- 장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자립 시 주거서비스는, 활동지원 서비스 50.0%(4명) > 주거(주택)지원 37.5%(3명) > 주거관리서비스 12.5%(1명)로 나타났다.
- 장애인이 성인, 아동·청소년인가에 따라 자립 시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주거서비스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성년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호하고, 성년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는 주거(주택)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주거(주택)지원 46.2%(6명) > 활동지원서비스 38.5%(5명) > 주거관리지원서비스 15.4%(2명)로 나타났으며, 남성장애인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자립 시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주택)지원 42.9%(9명) > 활동지원 서비스 33.3%(7명) > 생활비지원 14.3%(3명) > 주거관리지원서비스 9.5%(2명)로 남성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와 여성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자립 시 우선적으로 원하는 주거서비스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인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60.0%(3명) > 생활비지원과 주거관리지원서비스가 각 20.0%(1명)로 나타났으나, 지적+자폐성 중복인 경우, 주거(주택)지원 52.9%(9명) > 활동지원서비스 29.4%(5명) > 생활비지원 11.8%(2명) > 주거관리서비스지원 5.9%(1명)로 장애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지적장애만 있는 경우는, 주거(주택)지원 50.0%(6명) > 활동지원서비스 33.3%(4명) > 주거관리지원서비스 16.7%(2명)로 나타났다.

<표 93> 발달장애인 자립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서비스

(단위: 명, %)

유형		자립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서비스				전체
		생활비 지원	주거(주택) 지원	주거관리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성인(19세 이상)	3(11.5)	12(46.2)	3(11.5)	8(30.8)	26(100)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0(0)	3(37.5)	1(12.5)	4(50.0)	8(100)
성별	여성	0(0)	6(46.2)	2(15.4)	5(38.5)	13(100)
	남성	3(14.3)	9(42.9)	2(9.5)	7(33.3)	21(100)
장애유형	지적+신체(뇌성마비) 중복장애	1(20.0)	0(0)	1(20.0)	3(60.0)	5(100)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2(11.8)	9(52.9)	1(5.9)	5(29.4)	17(100)
	지적장애	0(0)	6(50.0)	2(16.7)	4(33.3)	12(100)

□ 소결

- 자녀의 자립희망여부에 관해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의 자립에 대하여 자립희망 50%(4명) > 잘모름 37.5%(3명) > 아니오 12.5%(1명)이며, 성인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경우 자립희망에서, 아니오 46.2%(12명) > 예 34.6%(9명) > 잘모름 19.2%(5명)을 나타냈다.
- 자녀가 자립할 경우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혹은 친한 친구 2~3명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53.8%(14명) > 다른사람(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살았으면 하는 경우 38.5%(10명) > 부모 3.8%(1명) > 모름 3.8%(1명)로 나타났다.
- 자립 시 원하는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성인(19세 이상)인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자립 시 주택유형은, 아파트 57.7%(15명) > 단독주택 34.6%(9명) > 빌라 7.7%(2명)의 순이고, 장애인 자녀가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파트 62.5%(5명) > 단독주택 37.5%(3명)로 어느 경우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립 시 우선적으로 원하는 주거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성년인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원하는 자립 시 주거서비스는, 주거(주택)지원 46.2%(12명) > 활동지원서비스 30.8%(8명) > 생활비지원과 주거관리서비스가 각 11.5%(3명)로 나타났다.



제언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량 확대에 따른 활동시간 개선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도 2019년 초기에는 월 44시간(일 2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일 5.5시간)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급여량이 확대되어 2022년 기준 단축형 85시간(일 4시간)에서 확장형 165시간(일 7.5시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가 일부 감액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로 개발된 주간 활동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 낮 시간 활동 등에 관한 종합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낮 활동과 달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주중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말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평일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삭감이 된다면 부모의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
- 이에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대하여 낮 활동 시간을 삭감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주간활동서비스 최소 서비스 기준 마련

-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주간활동계획 수립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질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현재 유사한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조차 지난 20년 동안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공기관별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주간활동계획 수립 및 진행,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보장, 서비스 기록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과 제공에 대한 최소기준이 제공되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서비스 모니터링 등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개별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특화서비스 제공

- 본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에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장애청소년들에게는 방과후활동을, 성인에게는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제공기관에 발달장애인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구성하고 제공하기 위한 개별서비스가 수립되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 현재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제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것에 불과하며 질적인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구성되었고 수립된 계획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또한 본 서비스 이용기간이 65세까지로 고령발달장애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건강질환 발달장애인이거나 고령의 중증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재활치료 등 높은 수준의 의료적 및 예방적 사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환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어려운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종사자 양성 및 교육 필요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지원자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발달장애인은 때때로 신체적, 언어적인 공격성, 자해 행동과 비정상적인 성적행동 등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며, 이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종사자 등은 업무에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 이에 최소 2인 그룹에서 4인 그룹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에 4인 그룹을 없애고 1인 최종중발달장애인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나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 현재 제공기관별로 전체 이용인원 20% 이상을 최종중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최종중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과 서비스 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현재 제공인력은 활동지원사 수준의 자격과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들이 낮 시간동안 그룹으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돌발상황, 행동처지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제공인력의 양성과정과 자격기준, 교육 커리큘럼 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용자별 주간활동서비스 계획 수립 및 기록지 작성

- 이용자의 낮 시간의 진행상태, 발달장애인의 발전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욕구사정 및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개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주간프로그램서비스계획(individual Day Programme Service Plan)을 수립하며, 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 또한 장애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낮 시간서비스의 진행상태, 발달장애인의 발전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서화 된 형태의 일지를 작성하여 부모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개별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체계화된 일지를 만들어 작성하고 타 기관으로 발달장애인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작성된 일지를 이관한 기관으로 공유해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전 과정을 쉽게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모에게도 일지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상담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해 지침에 명시하고 필요한 양식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강화방안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단순히 서비스를 수급 받는 존재가 아닌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제공기관 및 보호자가 주체되기보다는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제공기관과 보호자는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하고 계획수립단계부터 제공기관 및 보호자가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보다 다양하고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 활동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충분한 서비스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서비스 정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서비스 정보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며 충분한 서비스도 제공 받지 못하게 되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중심의 충분한 정보제공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요구자의 서비스 정보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즉, 제공시간의 제한으로 주로 등하교 및 치료 등을 위한 이동서비스 또는 가사서비스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서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는 제한이 있게 된다. 따라서 보호자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활동지원사들은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에는 대부분 보호자 없이 활동지원사와 발달장애인만 함께 있게 된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4조(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 발달장애인을 두고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특수한 근로여건을 고려한 휴게시간 보장 또는 보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동서비스 제공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애특성 또는 대중교통 체계(버스노선, 저상버스 보급 등)가 불편하여 부득이하게 활동지원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활동지원사 차량이용에 따른 비용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전히 활동지원사의 부담으로 가중된다. 특히 이동 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및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기에는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차량 이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부정수급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사이에서 상대방 자녀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실제 활동지원 시에는 자신들의 자녀를 지원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이 언어장애를 갖고 있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인권도 보호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무례한 요구나 대우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서비스

□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다양한 의사소통지원 방안 마련 및 사전 정보교류 강화

- 후견인들은 후견심판 준비 및 개시에 앞서 보완 및 개선사항으로, 후견심판 청구에 앞서 시군구 담당자와 피후견인을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점과 후견심판 청구에 앞서 피후견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비율이 5명 중 2명 이상이며, 피후견인의 의사반영은 낮다. 따라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과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공공후견제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아닌 대행해 주는 역할로 한정된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12조(장애를 이유로 행위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대행이 아닌 지원하는 역할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피후견인 의사결정지원 시,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정보제공 및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신뢰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지원 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실무인력 확대방안 마련

- 공공후견지원은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후견심판청구와 확정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으며, 공공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상담, 현장점검, 증빙서류, 심판청구서 작성 등의 사무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인력의 부족으로 공공후견 개시까지의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속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심판청구 준비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 지원센터에서 공공후견 사무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인력의 보충이 시급하다.
- 공공후견 만료기간 도래 시 후견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지속필요 시 재심판청구가 이뤄진다. 이때 실무인력은 신규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재심판청구 준비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후견 사무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인력의 보충이 시급하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 인상을 예산 증액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후견업무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평소 피후견인과의 친밀감 형성 및 욕구과약 등을 위해 주기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피후견인과의 만남 및 업무횟수에 비해 활동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본 조사에서도 후견인들은 월 15만원의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희망하는 활동비가 현재 활동비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무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후견활동 뿐만 아니라 욕구과약 및 친밀감 형성 등의 만남 등의 활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동비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이다.

4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 장애인 주거시설 편의시설 및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1인 독립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주택을 거쳐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포함한 이동 및 경제활동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과 가족,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손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금전관리 및 계약에 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과 부모 및 주거코디네이터들이 발달장애인의 독립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포함한 이동 및 경제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 공공후견인제도 모니터링의 필요

- 주거코디네이터들이 공공후견인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공공후견인제도의 취지 및 적용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탈시설 장애인들의 공공후견인제도 이용현황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주거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

- 정부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1인당 15만원의 지원(1박2일)이 책정되어 있으나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업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발달장애인가족의 휴식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 자립생활주택 주거코디네이터가 소진되지 않도록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다른 근무자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급지별 주거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주거비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주택 임대시장의 임대료 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현실성 있는 주거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만이 존재하며, 장애인은 그 중 하나의 대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소득 없음이 14.3%, 100만원 이하가 54.6%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51%에 불과한(구만서, 2021) 장애인에게 독립된 주거는 허상에 불과해 장애인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남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독립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가혹한 경쟁에 내몰리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만을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임대·분양 주택을 건설할 경우, 현재 배정된 장애인 5% 비율을 청년 11%, 고령자(65세 이상) 10%, 급여수급자 9%, 신혼부부 7%, 비주택거주자 5%, 국가유공자 5%(통합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국토부, 2022)인 것처럼 경쟁관계 비율이거나 그보다 못한 비율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계층과는 다르게 별도의 비율을 책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구만서(2021). 장애인의 주거정책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김대명(20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시 및 보완 과제. 국회입법처.
- 박능후, 고철, 천현숙, 이태진, 최현수, 노언정(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결합을 통한 주거복지의 청사진 제시(2003).
- 오민준 · 진창하(2019). 국민 · 영구임대주택 정책효과 분석 : 임대료부담 완화와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pp.5-33, 2019.
- 서원선 · 최복천 · 이상준(2021). 성인발달장애인 낮 시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해정 · 장기성 · 송기호(20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국토부(2021).
- 국토부 주택업무편람(2020).
- 보건복지부(2019).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 중앙발달지원센터. ‘공공후견인지원사업’ 브로셔.
- 통계청(20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VII

부 록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공통·일반적 설문

<표 94>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공통·일반적 설문

<p>1. 귀하의 자녀(서비스 이용자) 출생연도? _____년</p> <p>2. 서비스 이용자 성별? ①여 ②남</p> <p>3. 귀하 자녀의 장애유형은 어떻습니까??</p> <p>① 지적장애만 있음</p> <p>② 지적 +자폐성장애도 가지고 있음</p> <p>③ 지적 + 신체 (뇌성마비 등) 등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음</p> <p>④ 기타(_____)</p> <p>4. 귀하 자녀의 장애정도는 어떻습니까??</p> <p>① 도전적 행동 등이 없음</p> <p>② 가끔 도전적 행동이나 자폐증상을 보임</p> <p>③ 도전적 행동이나 자폐증상이 심함</p> <p>5. 귀하 자녀의 현재 주간활동(만12세~18세 미만인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서비스 이용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p> <table border="1"><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2019년 3월부터 시작방과후활동서비스 : 만12세~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2019년 8월부터 시작</td></tr></table> <p>① 이용함 : (약 __년__개월)</p> <p>② 이용하지 않음</p> <p>6. 귀하 자녀의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이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p> <p>① 이용함 : (약 __년__개월)</p> <p>② 이용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2019년 3월부터 시작방과후활동서비스 : 만12세~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2019년 8월부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2019년 3월부터 시작방과후활동서비스 : 만12세~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2019년 8월부터 시작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FGI 설문

<표 9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FGI 설문

<p>1) 주간활동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급여신청, 수급자격심위원회, 변경신청 이의신청 과정 등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등
--

2)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종사자 배치, 제공인력 교육(과정) 등

3) 프로그램

- 주간활동 협력기관과의 연계, 외부활동 등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서비스 질관리

- 정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역할

5)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및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설문

<표 9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설문

1. (이용현황) 귀하 자녀의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 ① (성인)주간활동서비스만 이용
- ② 청소년 방과후 주간활동서비스만 이용
- ③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동시에 이용

2. (서비스 선택이유) 귀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료가 부담 없어서
- ② 이용기간에 제한이 없어서(발달장애인 만 65세까지 이용가능)
- ③ 낮 동안에 다른 갈 곳이 없어서
- ④ 일자리가 없어서
- ⑤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 ⑥ 장애인관련기관의 추천으로
- ⑦ 기타

3. (제공기관 선택이유) 현재 이용하는 주간활동제공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①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 ② 송영서비스를 제공해서
- ③ 프로그램이 좋아서
- ④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 지원 특화된 기관이라 신뢰가 가서
- ⑤ 기타

4. (이용자 선정) 귀하 자녀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그룹형성(2인, 3인 4인 그룹 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③ 잘 모름

5. (제공인력 배치) 정부의 지침 상 현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있는 활동지원사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맞는 적절한 제공인력이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③ 잘 모름

6. (제공기관 공간) 현재 주간활동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제공기관의 공간의 접근성이나 위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불만족 한다. ④매우 불만족 한다.

7. (프로그램 인지여부) 정부의 지침 상 주간활동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주간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안다. ② 보통. ③ 잘 모른다.

8. (전반적인 만족도) 현재 제공받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전반(제공인력, 정보제공, 공간, 접근성, 프로그램, 피드백 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불만족 한다. ④매우 불만족 한다.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설문

<표 97>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설문

<p>1. (서비스 인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p> <p>① 정보를 얻는 과정도 쉬었고, 내용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② 정보를 얻는 과정이 쉬웠지만, 내용은 충분하지 않았다. ③ 정보를 얻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내용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④ 정보를 얻는 과정도 어려웠고, 내용도 충분하지 않았다.</p> <p>2. (제공계획 수립)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기관과 제공계획 수립 및 이용계약을 체결 시 자녀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십니까?</p> <p>①의견 전부 반영 ②의견 일부 반영 ③의견 반영하지 않음</p> <p>3. (활동지원인력 연결 및 변경) 활동지원 인력 신규 연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 즉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p> <p>4. (인력의 전문성) 현재 활동지원 인력은 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p> <p>5. (서비스 양의 충분성)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은 충분합니까?</p> <p>①적당하다. ②충분하다. ③ 부족하다(현재 1일 이용시간: _____ /희망 1일 이용시간: _____)</p> <p>6. (서비스 모니터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p> <p>7. (인권침해 경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녀가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오.</p> <p>① 없다. ② 있다. ③ 잘 모름</p>
--

8. (서비스 만족도) 현재 제공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불만족 한다. ④ 매우 불만족 한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설문

<표 9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설문

1. 후견활동을 위해 어떤 전문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 ①없음 ①회계사 ②변호사 ③법무사 ④사회복지사 ⑤기타()

2.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①재산관리 업무 ②은행 업무 ③주거 및 시설 입소 업무 ④의료관련 업무
⑤취업관련 업무 ⑥교육관련 업무 ⑦문화여가관련 ⑧기타()

3. 후견활동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년)

4. 후견인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실제 후견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②도움 되지 않는다.
③도움 되었다. ④매우 도움이 되었다.

5. 법원에서 후견인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 또는 보완할 점이 있습니까?
(중복체크)

- ①후견심판 청구에 앞서 피후견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
②후견심판 청구에 앞서 시군구 담당자와 피후견인을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③후견 활동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데 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다.
④법원이 정한 후견의 사무와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⑤공공후견인 등록절차는 간단하다
⑥기타()

6. 법원에서 후견인이 선정되기까지 발달장애인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①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②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③일부 반영되었다. ④대부분 반영되었다.

7. 피성년 후견인과 의사소통 방법은 수월합니까?

①의사소통 수월 ②의사소통 어려움

8. 후견활동을 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②거의 존중하지 않는다. ③조금 존중한다. ④매우 존중한다.

9.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입니까?(가장 노력한 것)

①피후견인의 이야기를 경청함

②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함(그림 및 영상자료 등)

③피후견인의 갖고 및 주변 사람들과 논의함

④기타()

10. 후견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적절하다 ④매우 적절하다

11. 후견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옹호나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현재 적절하다 ④필요가 없다

12. 본인의 후견활동이 피후견인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③영향을 미쳤다. ④많이 영향을 미쳤다.

13. 후견활동을 하기 전과 후견활동을 하면서 피후견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①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②부정적으로 변했다. ③변화 없다.

④긍정적으로 변했다 ⑤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설문

<표 99>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공통설문

1. 귀하의 자녀(발달장애인)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가?

- ① 자가 ② 그룹홈 ③ 지원주택 ④ 기타(_____)

2.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발달장애인이 살기 편한 집 내부 구조, 집 근처(복지관 등과의 거리 등)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현재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주거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① 일상생활 지원(가사, 위생관리, 식사 지원 등)
② 주거비지원 (월세, 보증금 등)
③ 주택관리(공과금 지급 등) 서비스
④ 주택내부 시설개선 (예: 벽, 바닥 안전매트 설치 등)
⑤ 주택외부 시설개선 (예: 방범시설 등)

4. 귀하의 자녀가 현재 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 분가하여 독립생활 (자립)을 하기 원하시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

5. 귀하의 자녀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 등 자립하면 누구랑 살기를 원하시나요?

- 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살고 싶다.
② 다른 사람(활동지원인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 살고 싶다.
③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나와 친한 사람 2~3명 정도 같이 살고 싶다.
④ 사회복지사 등이 없이, 나와 친한 사람 2~3명 정도만 같이 살고 싶다.
⑤ 기타(_____)

6. 귀하는 어떤 집에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 ① 아파트 ② 빌라 ③ 단독주택 ④ 기타

7.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주거(주택)지원
- ②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 ③ 생활비 지원
- ④ 일자리 제공
- ⑤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그룹홈 FGI 설문

<표 100> 발달장애인 그룹홈 FGI 설문

- ① 그룹홈에서의 생활만족도
- ② 그룹홈에서의 생활지원
- ③ 주거지 선택은 본인이 했나요?
- ④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마음에 드나요?
- ⑤ 현재 사용하는 방은 몇 명이 사용하나요?
- ⑥ 그룹홈이 아닌 독립된 주거를 원하나요?
- ⑦ 독립된 주거를 한다면 살고 싶은 주택은 어떤 유형일까요?
- ⑧ 독립된 주거를 한다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치 FGI 설문

<표 101> 발달장애인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치 FGI 설문

- ① 주거코치 경력은 얼마나 되나요?
- ② 주거지 선택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요 ?
- ③ 발달장애인의 주택구조 및 편의시설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④ 발달장애인이 주거관리 및 유지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요?
- ⑤ 현재 발달장애인의 주거만족도는 얼마나 되나요?
- ⑥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지요? (예: 일상생활 100% 중)
- ⑦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나요?,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건가요?
- ⑧ 발달장애인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었는지요?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하는지요?
- ⑨ 발달장애인 주거코치로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발달장애인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코디네이터 FGI 설문

<표 102> 발달장애인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FGI 설문

- ① 주거코디네이터 경력은 얼마나 되나요?
- ② 주거지 선택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요 ?
- ③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은 어떠한지요?
- ④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자립 및 독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요?
- 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역량은 어떠한지요? 자립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있는지요?
- ⑥ 발달장애인과 주거코치 간 의견대립 시 개입하나요? 개입한다면 주로 어떤 일로 개입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 ⑦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거코치와 활동지원사의 업무중복과 역할 설정은 어떻게 구분했나요?
- ⑧ 발달장애인과 독립주거에 양가감정을 느끼는가요?
- ⑨ 발달장애인이 독립주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FGI 설문

<표 103> 발달장애인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주거 코디네이터 FGI 설문

- ① 주거코디네이터 경력은 얼마나 되나요?
- ② 주거지 선택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요 ?
- ③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은 어떠한지요?
- ④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자립 및 독립주거에 대한 의지를 느끼는 지요?
- 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역량은 어떠한지요? 독립주거를 하면서 변화가 있는지요?
- ⑥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의견대립 시 개입하나요? 개입한다면 주로 어떤 일로 개입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 ⑦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거 코디네이터와 활동지원사의 업무중복과 역할 설정은 어떻게 구분했나요?
- ⑧ 발달장애인과 독립주거에 양가감정을 느끼는가요?
- ⑨ 발달장애인이 주거관리 및 유지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요?
- ⑩ 발달장애인이 독립주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⑪ 발달장애인 주거코디네이터로서의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센터 퇴소자 FGI 설문

<표 104> 발달장애인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FGI 설문

- ① 이전 자립생활센터의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② 이전 자립생활센터와 지금의 집에서 생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③ 현재의 자신의 집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었는지?
- ④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⑤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기 위해 센터, 정부에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센터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FGI 설문

<표 105>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퇴소 직전의 발달장애인 FGI 설문

- ① 자립생활센터의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② 자신의 집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었는지요?
- ③ 앞으로 자신의 집에서 생활 할 때 걱정되는 점은 있는지요?
- ④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⑤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기 위해 센터, 정부에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주간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공공후견인서비스,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수행기관 : 함께하는 사회복지정책연구소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 화 : (02) 2125-9965

F A X : (02) 2125-0924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TEL. 02-2125-9965 FAX. 02-2125-0924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897-9 93330

